

제429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2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6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3)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3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6)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9)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5)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8)
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8)
13.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2)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16.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0)
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8)
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3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4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4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4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5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64)
5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출)
5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제출)
58.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5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상정된 안건

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3)	6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7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7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35)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7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6)	7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9)	7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5)	7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8)	7
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8)	7
13.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7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2)	7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7
16.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7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0)	7
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8)	7
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7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7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	7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7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22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22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22
3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30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30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	30
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30
4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	30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30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30
4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
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
4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
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1
4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1
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1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1
5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1
5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1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1
5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31
5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4)	40
5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1
5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1
1.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7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2
58.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53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5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53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5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 중에 미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위 소관 30건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 케이시티(K-City) 및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2시 40분경에 이석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 및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7항까지의 타 상임위 법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들어 주시지요. 오늘 이 소위.....

○위원장 추미애 먼저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위원장 추미애 오늘 타 상임위 법안 등 여러 법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나경원 위원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해당 토론 기회에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그때 더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안건을 올리기 전에 3분만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좀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 3분만 주십시오. 3분만 주시면 말씀드릴 테니까.....

○송석준 위원 왜냐하면 본질의에서 자꾸 그런 걸 하면 안 해도 될 본질의를 자꾸하게 되잖아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리고 이제.....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자연스럽게.....

○위원장 추미애 여러 법안의 토론 기회와 또 예산안 관련해서 발언하실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토론하기 전에 해야 될 의사진행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 소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해서.....

○송석준 위원 한번 주시면 이후 회의도 매끄럽게 갈 수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나로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신동욱 위원 왜 그렇게, 왜 시작부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세요?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6)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9)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055)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8)
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8)
13.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32)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16.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0)
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8)
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추미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신동욱 위원** 아니, 3분짜리 의사진행발언을 못 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 나경원 위원**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우리 당이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걸 꼭 좀 넣어서 이 변경안을 고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추미애**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 나경원 위원** 이걸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2항까지……
- 나경원 위원** 참 너무 멋대로 마음대로 하시니까……
- 송석준 위원** 빼걱빼걱 가자는 거네요.
-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국토교통위 소관 30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설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사업자가 과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민사상 채권, 채무 등 계약관계에 대하여 징역, 벌금 등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의사일정 제6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안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안도 체계·자구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도 역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의 범위에는 개인정보가 제외됨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황운하 의원안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요. 의사일정 제14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안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안도 역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조경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한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해 상호 해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장관과 지사 간에 권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자 자신이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만 해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공매하는 자력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성 등이 있는지, 간이·신속한 징수라는 기술적·합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공매 규정을 둘 경우에도 권리행정인 강제징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의사일정 제19항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인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보험 등에 대해서도 적용함이 필요하여 적용례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이미 이러한 규정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으로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도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제2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제24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운송위탁계약 체결 시 표준·위탁계약서 사용과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간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가 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시기, 절차 등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사업구역별 사업면허의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다만 개정안은 등록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

는 유예기간을 주면서도 그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런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도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의사일정 제28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에는 개정안 제16조의2에서 주거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내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상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의사일정 제30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처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규정하는 불법방해행위의 야기 개념이 때로는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서 집행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32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별도 행정처분이 없이도 바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잃도록, 상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장관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항이지요—여기에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용 무인자유기구는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전면 금지 및 벌칙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 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면 전단 살포, 이런 유사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이미 위헌, 금지된 것을 이렇게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삭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기에 보면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거복지센터의 주거

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라고 새로운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은 이미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국토부의 훈령에 따라서 현재도 운영이 가능한 규정인데 굳이 법률에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이렇게 제도 운영을 경직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국토부 실무자들의 생각도 이것은 굳이 법률로 입법하지 않아도 제도 운영상 또 현실, 여러 가지 정책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취지는 좋지요, 취지는. 실태조사 결과 우리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이것을 법률에 그냥 굳이 못 박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별칙 규정 강화 이런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안에서 삭제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 판정받은 그 부분이 살포하는 어떤 내용, 표현물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이것은 공간적 개념을, 항공상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는 내용이 다르고 오해 살 소지는 이미 상임위에서 삭제되었고요. 공간을 제약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건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입니까, 이 법안이? 합의가 안 됐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합의는 안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안 됐으니까, 장관님,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좋은 취지의 그런 제도는 너무 강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숙의하셔서 서로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때 다시 대안을 올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도……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관한 지원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법률에 넣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하지만 좀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는, 명확히 하고 부령으로 정하는,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아까 송석준 위원님 말씀 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까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좀 그런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온 내용과는 좀 구분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합의가 안 됐지만 강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성윤 위원** 장관님 지역구가 전주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성윤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또 10월 달에 시행령이 통과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가 있는 대광법 적용 대상이 됐지만 도로법에는 여전히 광역시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법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 도로법 개정안도 대광법과 맞출 수 있도록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이 지금 1심에서 취소가 됐고요. 항소심이 돼 있고 지금 가처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12일 날 가처분 2차 심문이 있는데 이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에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국토부하고, 전북도도 보조참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 개념에 대해서…… 전북도민들의 정말 간절한 꿈이 담긴 새만금신공항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이번에는 꼭 가처분도 안 되고 사업이 순항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금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곧 항소심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현재 총력을 집중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또 더불어서 항소 준비를 잘해서 가능한, 현재 어쨌든 1차 재판에서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있겠지만 그 차질을 최

소화시켜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께서도 전주를 다녀 보면 KTX 전라선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성윤 위원** 역시 이용률을 보니까 2023년에 111%, 올해도 벌써 110%인데 이것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증편시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전라선 이용률이 너무 폭증해서 사실 굉장히 승객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선이 증편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곧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장관님, 얼마 전에 국토부차관님 경질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나경원 위원** 이유가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1차관께서 사의 표명을 하셨고요. 다만 그 전에 부동산과 관련한 본인의 발언 또 본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적 오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자칫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런 발언이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논란이 되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성공하셨다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정세로 잡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고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저는 장관께서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부동산 집값 잡는 것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송파 등 일부 지역에 있어서 신고가 갱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드셨잖아요. LTV 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에다가 실거주 요건 했는데, 결국은 돈 다 모아서 사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책을 가지고 진정됐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이런 데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의 1.3배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억누르자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고 싶은 사람 집 못 사고 그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집값이 빤히 오르게 되어 있다’ 지금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만 틀어막는다고 해서 틀어막혀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부작용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부동산 대책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동산이,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이 굉장히 폭등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현희 위원 그런데 이제명 정부가 출범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부동산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의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부동산 공급이 안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집이 모자라고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여건이 상당히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에 투기 세력 내지는 캠투자라든가 매입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같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맞습니다. 이번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부동산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폭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번 이재명 정부 때 해결하려고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이런 부동산 폭등 지역에 공급 계획 좀 제대로 세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어제도 서리풀 지구 다녀왔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해서 정말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샅샅이 뒤져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택 공급에 대해서 주택 공급 장관급 회의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실무선이 아니라 바로 장관급에서 협의를 해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 그리고 LH 내에 주택공급시스템을 만들어서 11월 하순경에는 서울에 아예 현판식을 하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캠코라든가 여러 부처와 협의할 내용들 또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이를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각별히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저희들이 청년과 신혼부부 또 장애인 등등 해서 이번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주거복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국토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장관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다시 이 법안을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야 협의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공안전과 관련된 것의 법안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거를 이념적 잣대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무안 참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픈 사건을 겪었고 거기서 새 땜하고 부닥치는 것만으로도 항공기가 운항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사건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2kg 이상 이렇게 했지만 2kg 미만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항공기 운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대형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상황에 하루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항공 운항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법안의 처리는 오늘 반드시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주거복지 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께서는 이 법안을 이렇게까지, 기존 법령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20년쯤 전에 아마 거의 최초로 주거복지센터가 도입될 때 직접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도화가 돼서 지원 체계까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주거복지센터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개 주거복지 상담으로 오는 분들은 긴급 상태에서 오시잖아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오시게 되고. 여기 법령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 세 가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대체 주택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대체 주택을 제공해도 이사 비용이 없어 가지고 빨리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사 비용을 제공하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긴급한 주거비 제공을 통해서, 많은 케이스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독거노인들이나 이분들이 아주 안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또는

재난을 당했을 때라든가 또는 결손 가정 등의 위기 가정들에서 주로 주거복지 내용들이 있는데 당시에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논의하는 데 막 수개월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기가 심화됐던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부에서 잘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를 해서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나 이쪽에서 주거복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주거복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번 법안도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어떤 거기에 명확하게 그게 규정됨으로써 그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좀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리풀 지구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사실 서리풀 지구가 저희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2만 호 공급 목표로 지구를 했는데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서초구의 청계산에서부터 양재역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미 상당히 서울의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주택을 잘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주거 지역으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대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이게 이미 상당히 고가의 주거 주택으로 개발이 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또 굉장히 클 수 있는 지역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주택가로 개발이 돼서 우리는 거기 빼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고 있어서 앞으로 저도 또 장관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겠지만 섬세하게 들여다보셔서……. 이건 이미 서울 시내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신도시 개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서울 강남의 잘만 개발하면 주택 문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보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좀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녀온 이유도 제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다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해서 좀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서 주민들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뵙고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신동욱 위원** 괜찮으시면 가실 때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짧막하게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 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항공 안전법상으로 저는 이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휴전선 인근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2020년도 6월 달에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 때문에 현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걸 사실 항공안전법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다른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따로 떼어내서 이 부분을 따로 논의를 하셔야지 이 휴전선 부근의 항공안전 문제는 실제로 거기는 비행을 금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행금지 구역인데 ‘항공안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사실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 국토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정말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비행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항공기 사고라는 게 자그마한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 것이라면 북한에서 쓰레기 봉투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은 문제인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우리만 일방적으로 항공안전법에 이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그걸 서로 충돌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비행금지구역이니까 아까 최혁준 위원님이 말한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고요.

신동욱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돌아가시면서 하시지요.

토론 안 하신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장관님, 보니까 항공안전법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된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의 관점에서 정부안을 마련하신 것 같고 현재의 위헌 결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취지가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공안전법상 이 개정안이 마련된 그 배경이 된 안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항공기 운항 피해 세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작년에 172편에 대한 항공기 운항 관련한, 예를 들면 이륙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회항이라든가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형 항공기 참사라든가 이런 안전 사고에 대한 것들을 또 정부 차원에서는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념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안전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으로 지금 법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이번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항공기 운행에 대한 피해 사례가 위원님 말씀처럼 총 172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19번 그러니까 대북 전단이 넘어갔다가 되돌아와서 실제 인천 강화 또 경기 김포·연천·포천 이런 지역 등등해서 19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혀 이념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이 비행 지역에서의 오물풍선이나 또 대북 전단들이 자칫 항공에 영향을 줄 경우에, 특히 이착륙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항공안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 법이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저희 법사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체계·자구가 안 맞아요.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에서는 개정안에 보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해 놓고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인자유기구가 무엇이냐 하는 게 법률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전단이라는 것의 정의는 있고요 또 살포라는 것의 정의는 있는데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없고, 항공안전법에 보더라도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는데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장관님. 그런데 기존에 이 127조 말고 129조에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이 등장은 하는데 그거는 형사처벌 조항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따로 정의 조항은 없이 아마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이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걸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왜 항공안전법상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사실 뭐 다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단 살포 그것 때문에 금지를 하는 이 조항을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에서 합의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체계·자구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2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추미애**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추미애** 예, 답변해 주시지요.

○**곽규택 위원** 예,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무인자유기구에 대해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2kg 이상 되는 물건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면 이번에는 2kg 이하도 가능……

○**곽규택 위원** 아니요, 무인자유기구가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항공안전법에. 그러니까 초경량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자유기구는요 정의가 없고, 아마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떠다니는 장치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연을 띄워도 무인자유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연 띄우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법상에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회의나 아니면 2소위에서 문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지금 방금 항공안전법에 무인자유기구 정의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법 2조 3호에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고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시행규칙 5조 4호에 기구류에서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률에 규정해야 돼요, 그런 것은.

○**김용민 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모두 다 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위임해서 정의 규정을 두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 아니, 형사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형사처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의 규정이나 아니면 대상 범위 등을 위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장관님, 가실 시간이 다 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것 조금 더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추미애** 토론 기회를 다 드렸어요, 제가.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희가 토론 한 번 더 하게.

○**위원장 추미애** 방금 위원님들 가운데 이 무인기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무인자유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형별적인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뚜렷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방금 김용민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세부 기준들은 사실은 별표나 이런 것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다른 처벌 근거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명확성의 개념에 어긋난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아마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 거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반대, 반대, 완전히 그때 격렬한 반대……

○**위원장 추미애** 반대도 토론인 거지요,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토론이고.

○**신동욱 위원**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우리가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2소위로 회부해서……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무조건 막으시면……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엉터리로 날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박규택 위원** 아니, 이 하나만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나머지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신동욱 위원** 나머지 통과시키고 이것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건데……

○**송석준 위원** 아까 제기한 2개 법안은 보류시켜서 소위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타위법의 경우에는 사실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 회의를 운영하기 전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타위법의 경우에 특히 국토위 관련해서는 방금 주거 문제나 무주택자 문제 또 주거가격의 안정 문제, 여러 민생 관련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민생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규택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풍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풍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풍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8항·제10항·제11항·제13항·제14항·제23항·제2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제9항·제12항,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이런 진행을 하고…… 박균택, 웃음이 나와요, 지금? 국회의원 된 것 창피하지 않습니까, 진짜?

○**박균택 위원** 창피하진 않습니다. 정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끼리의 토론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의사일정 제31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기로 하되 그에 앞서 이의가 있는 법률안을 제외한, 그러니까 31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을 먼저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7항·9항·12항, 15항부터 22항까지, 24항부터 28항까지, 30항·32항의 법률안은……

○**송석준 위원** 28항도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주거기본법.

○**곽규택 위원** 그러면 28항도 이의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토부도 실무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28항은. 주거기본법 한번 물어보세요. 국토부장관도 이것은……

○**위원장 추미애** 다시, 28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국토부장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한 거잖아요, 주거기본법은. 이런 것은 2소위로 넘겨서……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28항과 제31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이의가 있는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제7항·제9항·제12항,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제30항·제3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윤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14시59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다음으로 교육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항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있어 회피·배제 대상의 범위에 대학의 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신고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형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강화된 형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신설 형벌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5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 적용 기준을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해당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례를 통해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의 면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제34항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은옥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예결위 출석 관계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국정감사 끝나면서 정말 이렇게 국정감사 엉망진창으로 된 데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법사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니까? 아니, 법사위가 무조건 2소위든, 자구·체계 심사도 안 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가, 마지막 본회의 가기 전에 살펴보라고 만든 것이 법사위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회의가 맞습니까? 여기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회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맞습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저도 그랬겠지만 실핏줄 터지셨다면서요. 왜 본인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지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평화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안 줘.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해서 한 번 더 좀 논의해 보자, 그것 논의하면 결국은 민주당 뜻대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뻔한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정해진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 가면서 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다수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토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민주주의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라도 흡결 없게 통과시키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뭘 더 원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떼를 씹니까, 아니면 다수결을 부정합니까?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깡그리 뭉개시면……

그러시면서 또 하나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야당 위원들이 절규하는데 하는데 그렇게 웃고 싶으세요?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적어도 야당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면 심각한 표정이라도 좀 지으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 뽑시다. 우리 당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도 좀 지키세요. 추미애 위원장 지역구에는 민주당 지지자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추미애 위원장 잘한다고 칭찬받으려면 적어도 심각한 표정이라도 좀 지으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자마자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똑바로 제대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보장되게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법사위 회의 진행이 평화스럽게 안 된다였습니까? 만약에 평화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동욱 위원님의 저런 맥락 없는 신경질적인 자유발언이 가능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님의 발언권이 보장된 만큼 자유롭고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발언, 이 토론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신동욱 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그 평화가 위원장이 규정하는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발언권을 달라는 거예요. 왜 위원장님 혼자 평화스럽냐고요, 이게. 위원장님 혼자 평화스럽냐고요, 이게.

○위원장 추미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또는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하면 국회법에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위원 평화스럽지 않아요, 저희는.

○송석준 위원 간섭하지 말아요.

○신동욱 위원 이게 평화스러워요, 이게? 그대들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는데 평화입니까, 이게?

○서영교 위원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최혁진 위원 발언시간을 지킵시다.

○서영교 위원 혼자 합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조용히 있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위원 서영교 위원, 독재와 싸웠다면서요? 이게 독재 아닙니까, 지금?

○서영교 위원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위원 이게 평화입니까? 일방의 평화지, 이게.

○서영교 위원 아주 혼자서 이 장을 다 해 먹어.

○송석준 위원 그런데 왜 이것 간섭을 해요.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의 발언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등의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는 위원장을 근거 없이 모욕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드리고요. 토론권을 저는……

○곽규택 위원 그게 무슨 근거 없는 모욕입니까? 저희 위원회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데.

○위원장 추미애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이 그 법 위반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민의힘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토론권은 다 보장했습니다. 송석준·나경원·신동욱·곽규택 위원님 등 출석한 위원님들의 토론 기회는 다 보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론종결동의가 들어왔고 토론하지 않으신 미참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비교섭단체까지 다 토론 기회를 드려서 이 정도 토론이면 토론종결을 해도……

특히 사전에 국토부장관께서 2시 40분경에 이석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시간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위원님들에 양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토론하신 신동욱 위원께서 마이크가 나오자마자 발언권을 얻으셔서 토론 대신에 위원장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셨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안 주니까 자꾸……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도 미리 양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불가피한 일정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일방으로 무슨 평화롭게 혼자 그런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요.

○**송석준 위원** 그야 3분입니다, 3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는 3분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점도 다 양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분에 아까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덟 분 이상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아홉 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가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체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차관님, 학교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항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9월 26일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화재사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교육부에 미치는 영향, 사실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학교 교육행정은 입시생을 비롯한 중요한 학사일정과 관련이 되고 학생들 또 어린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차관님이 파악한 당시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로 인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은……

○**송석준 위원**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사례들을 좀……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복구가 완료가 되었고요.

○**송석준 위원** 오늘로 복구됐지요, 완료됐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저희 교육부 시스템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NEIS 시스템인데요. NEIS 시스템은 국정자원에 로그인만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 로그인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바로 조치를 해서 며칠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됐고 국정자원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한국어시험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해서 정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보다 저희 교육부에서 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확실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나중에 이것 밝혀질 텐데 일선에 실제 이런 전산망 마비로 인한 피해 상황이라든가 불편사항 점검하러 현장을 좀 가 보시고 또 관련 사항을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받은 적이 있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매일 보고받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메일? 그랬더니 다른 부처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부는 피해가 적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망을 따로 하는 것이 저희가 몇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에.

○**송석준 위원** 있기 때문에?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피해 본 것은 한국어시험망만 좀 힘들었고 기타 부분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학생들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학사일정, 교육행정의 여러 가지 소통 문제, 지방교육기관과 중앙교육기관의 소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희 교육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었었고 그 것은 저희가 중간에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을 해서 했고요. 저희가 시도교육청하고 연락하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국민들, 국민들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국민들도.

○**송석준 위원** 그리고 또?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바로.....

○**송석준 위원** 그것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따져 볼 겁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나중에 사실하고 다르면 혼날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할.....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과하게 일들도 많고 긴장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하게 일이 많고 긴장되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좀 돌보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서영교 위원** 학교 이야기하면 서류 처리하기 바쁘다, 서류에 매달린다 그리고 눈치 보기 바쁘다.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선생님이 아주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고교 무상교육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한시적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시켰다가 다시 저희가 통과시켰지요.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법으로 등록금 그리고 책값 그리고 급식비가 주어지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야간자율학습을 해요. 야간자율학습 급식비는 안 포함되어 있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급식에 오찬 급식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오찬 급식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오찬만 무상이고요. 석식은 희망하는 학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보십시오, 차관님.

오찬만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제가 고교 무상교육법 하기 전에 아이들이 고3인데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집으로도 못 가고 밖으로 배회한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석식을 먹어야 하는데 석식 돈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못 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배회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고교 무상교육하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착안하기를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데 놓치고 간 것은, 원래 제가 생각한 것은 야간자율학습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그게 석식의 문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대한민국은 국민의 낸 세금은 공평하게 다시 돌려주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석식을 지원 활용의 한번 묻고 싶고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석식을 지원 활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고교 무상교육예산, 저희가 예산서에 고교 무상교육으로 명시되는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고 또 급식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찬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석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을 지원 할 방안이 있는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방안을 찾아서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공론화해서 논의해 주시고

어차피 고3들 집중이고 또 고1이나 고2는 숫자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하겠다라고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지원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서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교육부차관께서는 학생 수 감소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과 교육예산에 있어서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서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학생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발언들, 위원장님의 일종의 민주를 가장한, 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일종의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 당 위원들 보고 ‘국회 법 146조의 모욕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님의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합니다.

제가 아까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습니다. 우리 법사위는요 그냥 위원장님 마음대로 법사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체계·자구 심사 그리고 위헌성 여부 이런 것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것을 과연 정의규정 자체를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느냐 한번 들여다 보자고 했을 때 그것 왜 못 보냅니까?

우리 국회 법사위에요 22대에 들어와서 단 1건도 법안제2소위에다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1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 보여요, 이 속이. 결국 국회가 민주를 포장한 독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날치기로 진행되는 겁니다.

토론 종결이 무슨 무제한토론이 됐습니까? 적당히 몇 명 토론권 주고 그다음에 토론 종결 한 명이 신청하고 그리고 그냥 서둘러서 끝내고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얼마나 국회법을 어기냐면요 오늘 올려 놓은 게 소위원회 구성 변경 해 가지고 갑자기 예결위하고 청원심사소위에 최혁진 위원을 넣는대요. 지난번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 있었어요. 갑자기 최혁진 위원을 넣어서 여권 위원을 1명씩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 위원의 소위 배치에 대해서 우리 당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이것 국회 법 48조 위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의 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규정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회의장은 국회법 48조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상임위에 준

용하면 소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법안심사 1소위에는 박준태 위원 대신에 주진우 위원, 예결위에는 박준태 위원 대신에 곽규택 위원 요구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우리 당 요구대로 안 하십니까? 국회법 위반하시는 분은 바로 추미애 위원장이고요 추미애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멋대로 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의회독재를 제일 앞장서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이것 올리신다고 했는데 국회법 48조 위반이시니까요 저희 당이 요구한 대로 우리 당 위원들 넣어 주시고 그리고 최혁진 위원을 추가로 넣으시려면 우리 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됩니다. 왜 무소속 위원을 한 명 더 넣으십니까? 저희하고 합의하셨습니까? 추미애 위원장 멋대로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멋대로.

○위원장 추미애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별도로 다음 토론 시기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멋대로 그만하십시오, 진짜.

○위원장 추미애 자구·체계 심사를 안 한다라는 건 속기록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전까지 국토위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활발한 토론시간을 해 주셨고요.

○나경원 위원 2소위에 회부해서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출석하신 국민의힘 교섭단체 위원님에 대해서는 다 골고루 토론 기회를 드렸습니다. 토론 종결은 토론을 하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종결하겠다라고 토론 종결 동의를 해 주셨던 겁니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전현희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제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4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4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4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5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5시27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6항부터 5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4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방식·형태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한 처리절차 간소화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규제특례의 취소·종료 및 임시허가의 취소와 동일하게 임시허가가 종료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도 판매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 부칙으로 5년간 청구권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안내 조치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도록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해 청구권을 새로 부여하는 개별법상 입법례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앙회의 안내·통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부칙의 경우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재정 악화, 다수의 법적 분쟁 발생 우려, 다른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안내·통지로 인한 반복적 시효 중단으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부칙의 내용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 규모나 시효 완성으로 안정된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등을 비교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41항, 42항, 43항, 44항, 46항, 47항, 48항, 49항, 50항, 51항, 52항 등 1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6항, 37항, 39항 40항 그리고 54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장관님, APEC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한미 관세협상 와중에도 여러 가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지금 많이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부문의 관세 협상 어떻게 마무리된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언론에 보도는 되었지만 조인트 팩트시트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준비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좀 덜 된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리 경쟁국인 대만 수준의 대우를 해 주겠다는 걸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대만 수준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정리된 건 없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직 대만과의 협의가 덜 끝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해 주겠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업계나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철강 부문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철강 부문은 저희들도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저희나 일본이나 EU나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대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계속 챙겨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석준 위원**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금 철강업계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는 건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농업 부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다 문제없이 타결됐다’ 이런식의 얘기도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모든 시장이 개방됐다’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명쾌하게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조만간 저희들 MOU와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를 보면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산물 관련해서는 과채류 관련해서 US 데스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하고 몇 가지 우리가 당초에 합의했던 내용 정도 들어가 있지 무슨 전체 쌀이나 소고기를 개방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도 끝까지 한번 잘 챙겨 주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상세 지도 이것의 시장 개방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도 우리 이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번에 안 돼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재촉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정부의 입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아직은 다시 재론될 여지는 남아 있는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앞으로 이제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을 줄지는 아직, 또 계속 나라별로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합의 상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현재 빠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송석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도대체 언제 팩트시트가 나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조만간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제 이쯤 되면요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 양치기 정부 아니냐 이런 얘

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봐 보세요. 2025년 7월 31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 이미 7월 31일 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차 정상회담 8월 25일에 ‘한미동맹 황금 시대다. 3대 목표 다 거뒀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9일 APEC 때 ‘한미 관세 협상 타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기뻐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잘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또 김정관 장관께서 애 많이 쓰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은 10월 30일 날 정상회담 하고 바로 행정명령 서명해서 11월 10일부터 펜타닐 관세가 20%에서 10% 낮춰 줘요. EU는 2025년 8월 21일에 협상해 갖고 1일부터 벌써 관세 인하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받았고 일본도 8월 7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기아차만 해도 3분기 관세로 인한 관세 손실이 3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통계 내고 있습니까? 우리 관세 손실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구체적인 각 기업별로는 보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기아차의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협상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이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신뢰가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 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만들어 놓은 노란봉투법부터 해서 각종 법이 기업을 다 발목 잡는 것인데 이 부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그 핵심은 동맹이다. 저는 그래서 GPU 5만 장 이재명 대통령 공약 때 저도 사실은 5만 장을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동맹을 다루는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 이런 걸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했는데 이번에 젠슨 황이 와서 주겠다고 한 것은 저는 민간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군요. 문제는 뭐냐……

○박은정 위원 사과나 하세요, 사과나. 5만 장 못 한다면서요.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나경원 위원 왜 사과를 합니까? 조용하세요.

○송석준 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박은정 위원 5만 장 못 한다고 한 사람 누구야, 정말.

○나경원 위원 엔비디아 주면 뭐 합니까. 전력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환경부로 다 갔는데요. 우리 AI 데이터센터 하나 운영하려면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으로는 우리 AI 전력 수요에 맞는 공급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젠슨 황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약속이 지켜졌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전력이 첫 번째이고 사실은 AI 관련된 예산 문제에서 들여다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구난방 잡화점식으로 우리가 예산 페 넣어 봤자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관 장관께서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관여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영영 AI 주권은커녕 우리가 AI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챙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나경원 위원 제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요. 기사 좀 한번 읽어 보세요.

○송석준 위원 예의 좀 지킵시다.

○이성윤 위원 5선 의원이 배울 게 없어요, 정말로.

○김용민 위원 보니까 이번 관세 협상 등등……

○나경원 위원 누가 고사를 지냅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용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 발언 중입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알려졌고 국민들이 정부와 기업이 진짜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갔다 이렇게 평가 해서 훈훈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고요. 제 파트너였던 미국 러트릭 상무부장관이 본인이 오랫동안 여러 나라하고 협상을 했는데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같이 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감명받았다는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잘 헤쳐 나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이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 하고 정부의 성과도 민간의 성과라고 하고.

어디가 됐든 좋습니다. 성과를 내고 우리가 AI 강국으로 나가겠다, 지금 3대 AI 강국 얘기하고 있지만 2위와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답답한데 장관님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해서 관세 부과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 준비돼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GPU를 활용하고 확보하고 하는 데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측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AI 무한경쟁 시대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원전을 많이 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장관님,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훌륭한 역대급 성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일부 야당에서는 이번의 성과를 굉장히 편하게 있는데요. 사실상 관세도 추가로 10% 인하를 하고 또 핵잠수함 추진 성과도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훌륭한 성과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낯 뜨거운 부분이 있고요.

○전현희 위원 국민들 앞에 정부의 성과를 알리니까 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처음 시작 자체가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저희가 그 기울어진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동등한 수준까지 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다는 소리를 듣지만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서 더 잘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협상을 한 것이 관세 협상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요. 이 양해각서가 국회의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합니까? 비준 대상이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이라 하면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된 국제 규범을 말하는데 지금 MOU가 공개되면 다 아시겠지만 MOU는 행정부 간의 일종의 합의 내용으로서 국제법이나 각 나라의 법에 대해서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저희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전현희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비준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전현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걸 비준 대상으로 하면 관세 인하가 또 지연될 우려도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난 한미 FTA가 2007년에 국회 비준안을 제출을 해서 무려 4년 2개월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은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속하게 빨리 시행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반도체 특별법 등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기업의 부담이나 국민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앞으로 추후 팩트시트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장관님,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평가 절하할 이유도 없고 또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면에서 국민분들께서도 상당히 안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정말로 우리가 뭘 얻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까? 그거 동의할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예를 들어서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뭐가 더 잘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먼저 일본하고 비교를 드리면 일본이 일단 규모 면에서 현금 투자가 5500억 불인데 저희는 일단 2000억 불 한도인데 거기에 저희는 연간 200억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3년 동안 일본은 5500억 불을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3년 동안에 들어간 돈은 맥시멈으로 600억 불이 되는……

○신동욱 위원 아니,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처음부터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처음부터 왜 3500억 불이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어쨌든 할부로 해서 우리가 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3500억 불을 처음 할 때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게 된 데는 3500억 불 구성을 현금과 대출과 보증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었는데 그게 미국 측하고 MOU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전액 현금 투자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굉장히 지난한 협상 과정에 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억 불씩 투자한다는 것도, 이것도 3500억 불을 바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200억 불로 줄어든 것처럼 착시가 있는 것이

지만 사실상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200억 불을 미국 주고 나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라는 걱정을 하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대상으로 핵잠수함 문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지요? 이게 국내에서 제조하느냐 미국에서 제조하느냐 또는 핵물질을 우리가 공여받을 때 미국 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으로 일본, 한국, 호주 다 어차피 주기로 한 것을 이번 협상의 대단한 성과처럼 잘못 포장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협상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1명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 보면 이제는 상세하게, 또 농산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꾸 미루지 마시고 좀 상세하게 국민들께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합의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그렇게 잘된 협상인데 왜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국민들이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된 거면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MOU를 하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오면 바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김정관 장관, 진짜 잘하셨어요. 사람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오고 그 염려했던 관세협상 잘됐잖아요.

젠슨 황,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다, 일거에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서 미국에 있는 아주 전문가하고 한 3시간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통계가 나온 것은 정확하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타임지 보도에 의거하면 유추를 하더라도 GPU 26만장을 보유하면 3대 강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장당 3만 원 내지 5만 원, 약 15조가 되는데……

지금 나경원 위원이 전기를 염려하셨는데 야당 위원들의 염려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경원 위원이요 선각자예요. 선구자예요. 6년 전에 검찰의 기소·수사를 분리하자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혜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새겨들으세요.

그리고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한한령이 풀렸어요. 저도 문체부장관 출신이지만 제가 국정원 원장을 하면서 안전부장, 공안부장, 중국 사람들한테 ‘이것 풀어라’ 했지만 안 됐는데 풀렸잖아요. 우리 문화 수출이 얼마나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영화가, 우리 아이돌 공연을 못 하고 있는 게 중국이었는데 이번에 잘됐잖아요.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가 해남입니다. 거기에 지금 송전선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을 허가를 안 해 줘요, 산자부에서 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AI…… 삼성, 국가 AI 센터가 들어오고 SK가 들어오면서 그쪽의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안의 해상풍력발전은 8.2GW예요. 특별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AI……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를 끌고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산강 물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장관께서 얼마나 협상을 잘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관세협상이나 무역 협상은 타결되더라도……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잘됐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블랙웰, 이걸 중국에 공급하지 않겠다 하니까 다 풀렸던 희토류를 중국에서 또 제한한다, 그러니까 늘 통상 협상은 돌출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블랙웰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 블랙웰도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희토류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게 장관님이 잘 대처해서 그때그때 잘하시라고 하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지금 진행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비디아하고의 과정에서 26만 장 확보하는 데 단순히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직접 뛰신 결과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부처, 기업, 정부가 함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 것도 국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블랙웰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저 정도 되니까 아는 겁니다. 진짜 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미중 정상회담이 경제부총리하고 재무장관하고 그렇게 잘됐는데, 정상회담에서도 잘됐다고 두 분 다 그렇게 만족했는데 블랙웰을 가지고 희토류를 또 제한한다, 이게 돌출이 늘 나오니까 장관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박수 보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 제39항, 제40항, 제5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41항부터 제5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관 장관님과 한성숙 장관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법사위에 출석하신 정부위원, 국무위원 가운데 최고로 칭찬받은 유일한 부처와 팀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하셨어요.

○전현희 위원 두 분 다 잘하셨어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박수 한번 보내 드립시다.

○위원장 추미애 그만큼 AI 주권을 확보하시기 위해 노력해 준 교섭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더 잘하세요.

○서영교 위원 GPU 26만 장도 엄청납니다.

○신동욱 위원 정말로 잘하신 거면 내년에 박수 쳐 드릴게요. 아직은 유보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잘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에게 이득이 되게 더 잘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신동욱 위원 6개월 후에 보십시오. 정말 걱정이 태산이야.

○나경원 위원 결론이 안 나왔는데, 걱정이야, 걱정.

○전현희 위원 일단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안 되면 그때 와서 말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합의서도 안 나왔는데 뭘 칭찬을 해요?

○송석준 위원 지금 속 타들어 가는 우리 산업계 현실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에요.

○전현희 위원 너무 잘못돼라 잘못돼라 하는 것 같잖아요, 국민들 보기에.

○송석준 위원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 가 보세요, 산업현장.

(의안번호 2206564)

5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출)
5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출)

(15시55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7항까지, 3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6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 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정안 부칙 2조가 개정법률 시행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일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결된 행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5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결위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로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차관님, 이번에 에너지 업무를 가져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임명되실 때는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2차관이 되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업무를 계속 담당해 왔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면서 관련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2차관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를 에너지는 어쩌면 산업

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다루셨듯이. 가장 중요한 산업 경쟁력의 핵심 부문인데 지금 기후환경부로 가면서 뭔가 에너지정책의 본질이 산업의 어떤 기초로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는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소위 신재생에너지는 선, 서구에서도 포기하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환경론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 그래서 핵발전소라는 아주 혐오적인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산업도 대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같이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은 정부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는 에너지 쪽만 계속 전담하시는 차관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에너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장관님이 오셨어야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할 텐데……

혹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들어 보고는 있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송석준 위원** 아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파악은 하고……

○**송석준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같이 하셔야지요. 어차피 주요 의사결정은 고위 간부들 간부회의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동안의 물 관련 업무가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면서 이것이 어쩌면 이수 그리고 또 중요한 자원으로서 물의 기능 그리고 또 물은 단순히 지난번에 강릉의 가뭄에서 알다시피 정말 유사시에는 부족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물 관련 업무라든가 에너지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환경보존론자들의 일방적인 논리가 아니라 산업 전체, 국가경쟁력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쓰세요. 의향 있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환경과 에너지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 에너지가 환경부로 갔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산업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고속도로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저는 정말 AI 시대를 맞아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과연 가능하겠느냐, 에너지의 공급이 충분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GPU 5만 개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걱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과연 충분하게 AI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공약과 여기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산업 발전 부분이자 에너지 수요, 특히 전력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히 AI라든가 데이터센터가 많이 앞으로……

○나경원 위원 1개 데이터센터 이용하는 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한 40MW 정도 되면 한 0.1TWh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데이터센터가 5TWh 미만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게 2038년까지 한 30TWh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에너지수급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원전 짓는 데 한 10년씩 걸리고 신재생 하는 것은 금방금방 전기가 나오는데 왜 원전을 짓냐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 호남지역에 출력제어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게 송전망이 깔려 있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송전망 관련된 법도 만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과연 필요한 곳에 전기가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느냐의 문제,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에만 의존했을 때 결국은 지금 호남지역의 신재생단지에다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업이 가고 싶은 데 에너지가 없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이 가고 싶은 데 에너지가 있게 하려면 결국은 원전, 특히 SMR 부분에도 집중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SMR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 부분은 어쨌든 후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실무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준비하시지 않으면 AI 에너지 고속도로는 공허한 말뿐의 잔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믹스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

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세계적 추세는 신재생에너지, RE100, 탄소중립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전 세계적으로 신규 투자 규모만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일단 전통 화석에너지라든지 원전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도 견의를 했어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병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만 하고 원자력을 포기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완전히 깔아뭉개 버리고 원자력만 했어요. 이것도 잘못인데 다행히 장관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병행 발전한다 이게 정부의 에너지정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박지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원자력에 반대하는 정책 잘못된 것이고 또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추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지 맞는데.

저는 사실은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간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것도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굴업도 문제라든지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혐오시설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게 산업부에 있어도 무슨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 안으로 들어가면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을 느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너지를, 서로 협력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빨리 의사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보고 계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신동욱 위원 어차피 간 거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GPU 전력 걱정을 자꾸 하는데 혹시 GPU 26만 장, 저도 몰라서 공부를

좀 해 봤는데 전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GPU 용량을 정확하게 제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26만 장 필요하면 발전소 한 기 정도의 전력수요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다만 GPU가 26만 장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기업별로 몇만 장 몇만 장씩 나눠서 들어올 거고 시기별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력수요가 나오는 것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물론입니다. 제가 쉽게 찾아봤더니 인구 20만 정도의 신도시 2개 정도가 1년 동안 소요하는 전력을 GPU 26만 장이 먹는다 이러거든요.

저희 당이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전 총선 때도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자 이런 공약도 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GPU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그게 물론 한꺼번에 다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한여름에는 전력 비상이 막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여름에 전력 많이 쓸 때 지금 상태로, 당장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GPU가 들어오더라도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을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슨 들어오는 것을 자꾸 펼쳐하는 것으로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GPU 들어와서 잘 돌려서 우리 AI 발전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전력 걱정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하세요. 이것 어떻게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우리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뒷받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동욱 위원 매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는 매우 신속하게 에너지고속도로라든지 지산지소 형태의 전력망을 구축해서 최대한 국민들께서 전력 부족 우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없으신 거지요?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선언적인 말씀만 자꾸 하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전력수급계획을 새로운 전력수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전력수요, GPU와 관련된 전력수요를 전력수요 대책에 반영을 해서 12차 전력수급계획을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동욱 위원 SMR 같은 것도 좀 고려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신동욱 위원 소형원자로 같은 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11차 전기본에서는 고려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도 1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전력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아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 방식과 관련

해서 이의 제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무소속 위원으로서 요청드리지만 현재와 같이 원칙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속되기를 위원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법사위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고통으로 많이 이어졌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토론권은 보장하지만 근거 없는 반대는 단호하게 철회하고 신속한 입법 처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빠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관련 여러 가지 욕구들이 융합돼야 되는 시대인데 윤 정부의 퇴행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지금 우리가 밀린 부분들이 있어요.

재생에너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3년을 허비하는 사이에 중국이 재생에너지 기술에서 상당 부분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설치선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해상풍력발전기만 하더라도 중국이 가격경쟁력도 높지만 미국의 GE 같은 회사만 보더라도 벌써 18MW까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8MW, 10MW 겨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가 가격경쟁력에서는 밀리더라도 적어도 기술경쟁력에서만큼은 앞서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산업생태계가 국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된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호남권에 가 보니까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참여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산업부 인프라와 환경부가 결합이 됐으니까 해남에 에너지를 활용한 산업단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해남군도, 박지원 위원님 계시지만 영암군도 그렇고 호남지역의 많은 곳들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균형발전의 어쨌든 변화, 모멘텀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이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 정부 부처의 힘들이 모여 있고 재생에너지와 아까 원전까지 다 융합하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이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야 된다. 관련 입법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신속하게 내 주시면 국회에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형 전력망을 지역 단위로 많이 구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과 제5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현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4시 4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수를 8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며 각각 무소속 최혁진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3분.

○나경원 위원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소위, 2소위를 바꿔 달라고 그랬습니다. 1소위위원회에 박준태 위원님 대신에 주진우 위원님, 예결소위에 박준태 위원님 대신에 곽규택 위원님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안건을 올려 주시지 않고 계세요.

국회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우리 야당 상임위원이고 여당 상임위원이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나요?

위원장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땐 데 보시고 땐 척 하시지 말고. 듣기 싫으신 거지요?

자, 국회법 4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을 우리가 같

이 읽으면, 저희가 제출하는 교섭단체에서 요구하는 변경안을 올리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을 남용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소위원회에, 제가 간사 합의 없이 왜 무소속 하나 늘리냐 했더니 국회법 규칙에 따르면 몇 명으로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된다. 이거 이제 국회법 찾아 오실 거예요, 규칙이랑. 그런데 이 모든 안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49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49조 한번 읽어 보세요. ‘의사일정, 개회일시,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올리시는 것도 국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회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회법 49조 2항에 따르면 소위원회 인원을 변경하는 것은 국회법 49조 2항 위반이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 48조 1항에 따라서 상임위원 배정을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하는 것을 국회법 57조 8항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준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간사 협의 없이 무소속 위원을 1명 더 증원하는 이 안건을 상정하시는 것 자체가 국회법 49조 위반이오. 두 번째, 국회법 48조 1항에 위반해서 우리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음에도 우리 위원을 개보임을 안 해 주시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의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마음대로 국회 운영 좀 하시지 말고요. 독재 그만하세요. 절대 안 들으셔, 듣기 싫으신 거지.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광규택 위원님.

○박지원 위원 사퇴를 해.

○나경원 위원 그러고 싶어요.

○이성윤 위원 환영합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법안심사1소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소위 위원의 배치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계속해서 변경을 위원장이 안 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 말씀을 들으세요, 저희 야당의 말씀을. 딴 척만 부리시지 말고.

○곽규택 위원 그리고 위원 발언할 때 보좌관이신가요? 일부러 자꾸 가셔 가지고 말을 거시는 것 같아.

보세요. 다른 때는 말 안 하다가 우리 쪽에서 말하면 가서 딱 말을 시켜요.

○김용민 위원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안 그래요.

○박지원 위원 아니, 사람은 두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면서도 들어.

○곽규택 위원 사람이 자꾸 당하면요 피해의식 생겨요.

○위원장 추미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발언하세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소위에서 박준태 위원님을 주진우 위원님으로 변경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예결소위에서도 박준태 위원 대신에 저를, 본 위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진작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1소위 그리고 예결소위 역할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빨리 요청사항을 위원장께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서 전체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관련해서 의장님의 선임이나 개선권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시는군요. 48조 1항의 법상은 그게 맞기는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준용했을 때 그러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격이 상임위에서는 간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간사위원이 없어서 간사의 요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케번이 어디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간사도 안 뽑아 주시고.

○김용민 위원 그래서 간사 선임을 먼저 하고, 이미 나경원 위원님에 대한 간사 선임은 부결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따라서 정기국회 내에는 저희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시다면 다른 간사를 추천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도 안 되고 간사 선임조차도 문제 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재예요.

○신동욱 위원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토론을 그만하시지요.

제가 국회법 해설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민주당 독재정, 그냥 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중간에 이렇게 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동욱 위원 이렇게 계속 파행으로 가실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 해설서에는 제57조에 소위원회 규정이 있고요. 해설서 270쪽,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보면 소위원회의 위원들의 선임과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송석준 위원 왜 없어요? 여기 나오지요.

○위원장 추미애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위원회의 위원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및 개선을 하는데 그 경우에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간사가 안 계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어제 15시경에 공지를 했고요. 또 15시에 공지할 때 17시까지 의견을 달라라고 한 바 있고요, 이후에 협의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공지했어요?

○나경원 위원 공지하면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따라서 그 과정을 지금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경원 위원 국회법 해설서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패스트트랙 할 때 국회법 해설서에 위반해 가지고 사보임하지 않았습니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안건에 대한 토론 신청입니다.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균택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 찬성합니다.

○나경원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민주당 독재 의회인데 뭐.

○신동욱 위원 간사를 표결까지 해서 부결시키고 일사부재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런 것을 해 놓고 또 그렇게 해서 일사부재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 독재 의회예요, 민주당 독재 의회.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 등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민주당 다 벌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 벌 받을 것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도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시면 나중에 벌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

○위원장 추미애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 혼자서 다 정할 거면 이것을 안건으로 왜 올려요?

○나경원 위원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곽규택 위원 혼자 정하면 임명하면 되지.

○나경원 위원 임명하세요. 임명장 주세요, 임명장.

○위원장 추미애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경원 위원 이제 표결도 마음대로 해. 우리당 위원 중에서 못 오는 사람 마음대로 지정해서 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경원 위원 이게 바로 독재예요, 이게 바로 독재.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왜 간사를 선임 안 해 줍니까?

○송석준 위원 진짜 우리 법사위를 이렇게 추미애 독단으로 한다는 것은…… 즉각 중단하세요.

○곽규택 위원 소위 위원도 위원장 마음대로 정합니까?

○나경원 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원 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송석준 위원 우리 절대 이것 수용 못 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나경원 위원 왜 무소속은 마음대로 넣으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됩니까, 이게!

○송석준 위원 소위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교섭단체, 분명히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나경원 위원 자기들 몇대로야. 무소속 마음대로 넣어서 숫자 늘리는 것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김용민 간사! 이렇게 마음대로 넣어도 돼? 무소속을 왜 하나 더 넣어?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6 대 3으로……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송석준 위원 우리 절대 수용 못 합니다. 수용 못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경원 위원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국회야? 6 대 3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진짜 몇대로들이야. 이렇게 몇대로 하는 국회는 뭐하러 합니까?

○이성윤 위원 진짜 몇대로 주장하시네. 진짜 몇대로 주장하셔.

○나경원 위원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여러분들 들리리입니까?

○송석준 위원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해요. 이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국회입니까, 국회?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아니, 무소속도 소위를 할 기회를 줘야지. 무소속이면 소위를 못 하나요?

○나경원 위원 누가 무소속 마음대로 넣어! 누가 무소속 넣어 달라고 그랬어?

○서영교 위원 아니, 최혁진 위원이 국회의원인데 소위를 못 하나요?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소위 구성을 갖다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교섭단체 간 협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간사를 고의로 임명을, 우리가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 간사로 인정을 해 주고 야당 위원들 전체와 협의를 해야지요.

○곽규택 위원 소위 위원 구성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7시01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여러 가지로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6년 5월 26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뭐를요, 뭐를? 뭐를 연장하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뭐를 연장하는데요?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때 들어.

○서영교 위원 얘기할 때 좀 들어, 진짜.

○이성윤 위원 의사일정을 보시라고요. 여기 두 번째에 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청원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우리는 앞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청원 기간을 늘리자는데 뭘 동의를 안 해.

○**신동욱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진짜로?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앞의 안건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독재적 안건 구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즉각 폐기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최혁진 위원님 좀 넣자는데 뭘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래요.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1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5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7시05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개요만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간부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 총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18억 원 증액된 1조 699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737억 원이 증액된 4조 7378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145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 감독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예산 둘째, 범죄피해자 생계지원 강화, 인공지능 기반 법무행정시스템 구축 등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예산 셋째, 현장인력 중심 처우 개선,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인권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환경 조성 예산을 중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담지 못했으나 국회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무부 주요사업 요청사항 책자를 배포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법무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회계연도 법제처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을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6억 3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 주요 특징입니다.

먼저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입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종합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 예산 33억 4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205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AI 등 미래 법제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법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추진 예산을 반영하는 등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내역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제처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14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예산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되 시간관계상 일반 현황,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2026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26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 감사원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2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44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6쪽,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보다 3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1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 경비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국내여비 5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연구용역비 4억

원이 감액되는 등 올해보다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적극행정 지원사업은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올해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는 본원 및 감사교육원의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해서 업무수행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산운영경비는 감사원 내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5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협력 강화는 최고감사기구 회원국과의 교류 증진 등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박지원 위원 무슨 ‘감사 역량 강화’ 하면 그게 되겠어요? 감사원은 역량 강화가 안 돼요.

○곽규택 위원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좀 들어 봅시다.

○감사원장 최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INTOSAI 회계감사 수행을 위한 여비를 신규 반영하는 한편 운영비는 감액 편성해서 올해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기구 역량 강화 사업은 ODA 주관부처 이관 계획에 따라 사업 소요 예산 전액이 순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구내식당 운영 인력의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올해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운영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올해보다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9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등 정보화사업 예산을 146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원활한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 및 공판활동 예산을 14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보수를 지급하고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13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 예산안은 심판업무의 충실한 지원과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21억 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인건비는 직제 증원 및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5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기본경비입니다.

관사 임차보증금 증감 및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보다 3억 2900만 원을 증액한 7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대비 16.5% 증액한 19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전자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이며 총 3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본부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내역사업 완료 등을 사유로 총 4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금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격려를 새겨 내년도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법부의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면밀히 검토하여 사법부 발전의 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 강화, 사법부 공간 최적화, 재판 필수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서비스 혁신, 사법부 AI 플랫폼 구축 그리고 안전한 법원의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416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4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500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878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른 청사 공간 확보, 서울회생법원의 이전과 통합도산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회생법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판사정원법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조정실 등 재판 필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국선변호료 및 저소득층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예산을 증액했고 차별 없는 법원의 구현을 위해 장애인 키오스크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무직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휴게시설 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 재판 절차의 효율화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법부 AI 플랫폼 구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재판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청사 보안장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법원 예산 및 기금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법부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원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

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법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과 총괄본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본 1페이지,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 전체 규모를 개관해 보겠습니다.

법무부·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29억 원이 증액된 7조 4935억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안은 법무부 4조 6075억 원, 대법원 2조 888억 원 등 6개 기관 총 6조 9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법무부의 교도작업특별회계 1302억 원,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2885억 원 등 2개 특별회계에 전년 대비 16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188억 원입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51억 원,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752억 원 등 2개 기금에 전년 대비 1822억 원이 증액된 72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본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총괄해 드리면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7개 사업에 대해서 총 12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본 4페이지,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은 총 50개 사업의 6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해서 5페이지 10번의 국가배상금 지급은 법무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4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여순사건 등을 비롯해서 최근 항소 포기로 확정된 과거사 사건 관련 배상금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이런 부분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21번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은 2023년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과 그리고 부동산 투자이민 유치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마는 2023년도 제도개편 이후에도 2024년의 실적을 보면 46건에 856억 원으로 개편 전인 2022년 332건, 1566억 원보다 실적이 낮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2010년에 도입됐습니다마는 2023년에 제도 개편 이후에도 2024년 실적을 보면 20건, 218억 원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24번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액은 총 72억 원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총 486억 원입니다. 이들 경비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시정요구의 취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국민 신뢰 제고라는 관점과 그리고 기밀 유지의 필요성 간 조화 등을 감안해서 일반경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43번 소년원생 수용 사업은 소년원 송치인원의 꾸준한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급식관리위원회 등의 경우에 외부 위원 참석이 부진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10페이지 47번 교도작업 사업은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가 낮아서 잣은 퇴사와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채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기금입니다.

11페이지 50번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추가 개소와 관련된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의 경우 원스톱솔루션센터 중 서울센터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2024년도에 개소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센터 운영의 성과와 관련된 통계를 집계·분석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완료 이전이라도 성과 관련 통계를 집계·분석해서 추가 개소할 센터에 대해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총괄본 12페이지 법제처 소관입니다.

법제처는 총 8개 사업, 10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3페이지 6번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 중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 AI 환각현상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출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3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기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공신력이 발생하게 됨에도 법제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을 의미하는 AI 환각현상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총괄본 14페이지 감사원 소관입니다.

감사원은 총 5개 사업, 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 2번 기본경비 사업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보수인 상용임금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불용 등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감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 15페이지 5번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중에 국제기구 외부 감사 진출 추진의 경우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수입 여부가 불확실하여 반영되지 않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부 감사 관련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반영을 검토하여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총괄본 16페이지 공수처 소관입니다.

공수처는 총 4개 사업, 4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6페이지 1번 공수처의 대표 성과지표는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임무와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재설정하는 등 성과지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괄본 17페이지 현법재판소 소관입니다.

현재는 총 10개 사업, 1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페이지 4번 국선대리인보수등에서는 여전히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의 내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요.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참고인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았습니다.

다음, 총괄본 20페이지 대법원 소관입니다.

대법원 소관은 총 20개 사업에서 25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 1번 총괄적 사항으로 대법원의 소관 세부 사업 중에 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야 될 사업이 기본경비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과 사업성격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 2026년도 기준 총지출 2조 5001억 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사업액 비율이 11.5%에 그치고 있는데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 31.3% 등과 비교해서 그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21페이지 10번 전문재판운영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시설 관련 예산은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보안 및 방호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서울회생법원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구 서울회생법원 공간 재배치 사업의 경우 자산취득비의 과다계상이 엿보입니다.

법원이 민간시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례는 서울회생법원이 첫 사례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청사이전 배치 기본계획 등 이전 준비단계에서 보인, 이전 단계에서 나타난 보안 및 방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캠���양재타워에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입니다.

22페이지 16번 예비비의 경우 등기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없었고 또 예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할 때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입니다.

23페이지 18번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의 경우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계획안 중에 실시설계비 등 연내 집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금안 규모는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원 방지를 위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 중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최혁진 위원 먼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저를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좀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지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모든 부처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예결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더 검토를 하겠지만 이제명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부처에서 낸 여러 가지 핵심 예산과제 중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실현의 정책 과제에 부합하는 도전적인 목표 또 도전적인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방만 기관 경영에 연루되어 있는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지구연 재판부의 재판 내용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몇 편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재판관인지 아니면 무슨 예능프로그램 사회자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말투는 거의 술집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변호인단이 막말 수준의 말을 퍼붓는데도 제지도 하지 않고 그것을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까지도 보게 돼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최혁진 위원 그런데 그런 재판관이 저렇게 진중하지 않게 재판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저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대법원이 당연히 재판부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주의를 주든가 뭔가의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한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의 내란 재판 자체를 희화하는 데 대법원이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국민의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산 검토인데 그러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들 보기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저런 행태들을 방치하

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저는 검찰 관련 예산에서는 특활비 관련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떡값으로 큰돈 주고 하는 것은 통일교 같은 데서나 하는 거고, 거기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로 어떤 분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증빙에 대한,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빙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를 보고 특활비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단 한 푼도 국회의원님들 보시기에,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는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 부처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됐던 정책이기도 하지만 아까 범죄피해자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범죄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당시에 법무부가 농림부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농업이라든가 치유농장들 같은 경우에 범죄피해자들이 와서 커튼으로 가리고 집 밖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포감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일자리를 얻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윤 정부 때 대부분 사라지거나 정지되어 버렸어요.

또 그때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내용,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민생범죄 피의자들 같은 경우 교도소에 와 있으면 가족들은 경제적 빈곤에 빠지니까 교도소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청소년인 자녀들이나 이분들한테 보내 줘서……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이렇게 기본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로 존중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복원을 하셔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수용자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차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항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요 법무부에서—일반회계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 대비 4.8% 정도 증액됐고 감사원 1.7%, 현법재판소 6.3%, 대법원 5.6%, 그 정도의 세출예산 증액안을 만들었는데 법제처는 전년 대비 무려 31.9%가 증액된 세출예산안을 만들었고요. 공수처는 전년 대비 17.3%, 이렇게 많이 늘린 세출예산을 만들었어요. 아주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국감에서도, 고액을 들여 안마기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시더니 금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년에 검사 스피치 교육을 한다면서 일인당 140만 원을 책정해 놨답니다.

‘고위공직자안마처’ 넘어서 이제 ‘고위공직자옹변학원’입니까? 공수처의 검사들은요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판활동 지원을 하는데 무슨 스피치 교육을 한답시고 일인당 140만 원을 씁니까?

공수처장님, 나랏돈이 그렇게 헤튼 게 아닙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

○곽규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이 약 46% 정도 갑자기 확 늘어난 상황인데 왜 그렇지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소위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은 국선변호료,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그 부분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하는 법률구조 사업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저께 토론회도 같이 갔었습니다. 보니까 대한변협에서 경제적 약자 또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이런 곳에 법률구조를 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건 법률구조공단처럼 공적인 구조가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스스로 하는,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후원을 해 가지고 하는 정말 민간 주도의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원래 대법원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가지고 그 지원을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2014년도만 해도 이 기금에서 5억 원 정도를 지원해 오시다가 점점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이것 좀 다시, 이렇게 취지가 좋은 사업에 보조 좀 늘리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곽규택 위원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저도 이걸 어제 토론회 가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20년 넘게 대한변협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약자, 범죄피해자, 다문화 가정, 정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손이 미치지 않는 이 어려운 계층을 법률구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취지도 좋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대법원의 기금에만 의존해 있다가 지금 그 기금의 지원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을 해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법무부에도 보면 법률구조 사업이 있고요 내역사업으로 충분히 이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구조하는 여러 법인들이 있는데 법률구조재단 여기에는 정부보조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때까지 그냥 변협 차원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곽규택 위원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좀 더 하시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공수처에 그렇게 검사 스펙치 교육하려는 돈 조금만 돌리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법률구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앞으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또 안 계시네.

예결소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이번 예산은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료 또 저소득층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예산을 증액하셔서 참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차별 없는 법원을 만들고 무엇보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공무직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설치하는 예산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건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 주된 관심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법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관예우라든지 법조 비리 또 그동안 국감에서 판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법원 내부의 자정작용 이런 것이 사실상 미흡하고 제 식구 감싸

기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그래서 처장님 생각에는 만약에 대법원장이 해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부분의 법관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든지 또 대법관이라든지 사실상 법조계의 가장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옷을 벗고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의 변호사 전관예우를 좀 더 차단하기 위한 조치나 법령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현재에서 판단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수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 전직 고위·기관장 출신에 대해서 어떤 예우 조치가 수반되는지하고 비례해서 그에 대한 영업금지 이런 부분의 정당성이 상승해서, 올라갈 텐데 그런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법원 출신의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 맡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지금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합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합에서는 전합 대법관들이 각종 연고관계, 친인척 이와 같은 분들이 로펌 변호사로 있다든지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현희 위원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아예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실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또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실제로 법조 비리나 대낮에 술판 떨인 판사들이나 룸살롱 출입 판사나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된 징계조치 하지 못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게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윤리감사관실을 사실상 실질화하고 독립성을 좀 더 갖추도록 개편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이런 저런 문제점이 제때 발견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

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도 윤리감사관실이 일반행정처로부터 독립하면서 독립성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기적인 관계가 좀 끊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윤리감사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사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부 내부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안이 준비가 되면 국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법제처장님, 지난번에 처장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법제처장 조원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후에 또 유튜브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인데.....

○신동욱 위원 그래서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무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장님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시고 현재 사무처장,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수장들이신데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이런 표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나름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나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법체처장이 어떻게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지금 재판이 중단된 혐의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당에서 탄핵 얘기도 나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물어봤어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돌아온 답이 ‘법제처장은 아닙

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법제처장 조원철 그게 헌법에 탄핵소추 대상이 특정돼 있고 마지막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실무제요 513페이지를 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재량사항이지만 탄핵제도의 취지로 보아 입법·사법 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법제처장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질의를 받았으면 꼭넓게 알아보시고 약간은, 금방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의 법제처 예산이 지금 보니까 31%가 늘었는데 인건비 같은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는 게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보면 AI 얘기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생성형 AI……

○법제처장 조원철 그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금 까지도 전혀 손을 안 봐 가지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갑자기 이 어려운 시기에 법제처가 몇십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기관들 다 5% 6% 물가상승률만큼 올렸는데 법제처 혼자 이렇게 왕창 올린 게 지금 그 올린 이유를 보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법제처장 조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번에 국자원 화재로 셧다운됐던 국가법령정보제공센터 그 부분을 AI에 접목하는 사업이 행정부의 AI 접목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게 있고……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법제처장 조원철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정부입법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이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법제 공무원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필수적인 사이트입니다.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따져 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장관님,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증액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유지하고 공소 업무 예산이 499억에서 524억, 상대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소유지 담당 업

무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아니, 이 예산안은 그 전에 만들어진 예산안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어쨌든 검찰청이 간판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청 직무의 상당 부분에 공소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내년도부터 10월 2일까지 중수청이 설립돼 갖고 그게 활동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기본 임무는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실제로 검찰이 수사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체감하기가 그렇습니다, 특검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올해 검찰 수사 예산이 2949억인데 내년에 3593억 원을 잡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제 수사도 안 하는데 무슨, 내년 되면 다 해체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 떠들썩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안 하는 것뿐이지 기존에 해 오던 일반적인 사건들 처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자세히 따져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검찰의 수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특정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 했던 걸로……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제출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다만 지금까지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우리 예산실에서 국회 파견을 거쳐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늦어 가지고 또 2중, 3중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바꿔 가지고 예산실에서 바로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뢰인들을 상대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의 업무 만족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했더니 6년 연속 70%~80%의 만족률을 보이던데 정말 충실히 일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분들로만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수가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것은 공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또 국선 전담 변호사가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민 인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국선변호인들 보수 내지는 수당 또는 운영지원비를 올려 주자는 제안을 했고 옮기는 안이 국회 차원에서 증액 합의가 됐다가 내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증액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국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 단계에서는 오히려 일반 국선보다도 보수 역전 현상이 생긴 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기재부에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 제안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통령 시정연설하시는 날 거부하고 성명을 내고 방해하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특검은 정부 차원에서 업무에 관여를 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 법무부와 어쨌든 보호라든가 저희 그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정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영장청구에 관여한 바도 없는데 대통령님께 그렇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불참하는 이런 것은 화풀이를 엉뚱한데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떤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장관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장소를 네 번이나 지정을 하고 세 번 바꿨던 이 행위가 표결에 아무런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참여했던 18명 말고 나머지 90명은 자기의 뜻대로 추경호 원내 대표의 협조 상관없이 자신들 의사로 내란에 동조를 해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답변 자체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 갖고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아무튼 내란의 밤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처신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대응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법무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작년에 무도실무관, 감호 또 보호 담당 실무관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처럼 어떤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직역의 공무원들 특수직무 수당을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쯤 되는 8만 5000원 정도라도 지급을 해보자라고 내부적인 합의를 했다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증액을 못 하고 끝나 버렸는데 이번에 장관님 오시고 나서 8만 5000원 증액을 시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재정당국과 그 절반 정도, 4만 원 정도 증액으로 합의는 됐는데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장관님 덕분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예결위 과정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검찰개혁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공소청 설치법이나 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돼 갖고 내년 10월 2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송석준 위원 마무리할 계획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 안에서는 제가 정확한 보고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예산을 우리가 논의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오늘 여기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내년 검찰개혁안이 지금 말로는 한다고 변죽을 잔뜩 올려 놓고 하나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말로 국수위 그것은 사실상 위헌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은 확실히 안 하기로 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안이 통과돼 있지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수위는 국가수사위원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수위는 법안이 아직 국회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엄두도 낼 수가 없고 공소청, 중수

청 말로 애드벌룬 띄워 놓고, 예산 여기서 올해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일단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쓸 겁니까? 이를 테면 중수청, 공소청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 올해 이번 예산안 금년 말 통과되기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일단 법안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송석준 위원 어쨌든 현실이 그렇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법무부는 공소청에 관련된 법안은 바로 이관될 준비가 돼 있고요. 중수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두 번째도 조직 운영비, 새로 신설비 뭐 여러 가지, 세부 예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내년 10월 2일까지는 현재 현행 검찰청 체제로 가니까……

○송석준 위원 가는데 그게 어차피……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대로 가고 그 이전에 법안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이런 구조로 봤을 때 한번 더 따져보세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중수청은 저희 법무부 소관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다만 명백한 것은 바로 특검, 특검은 연장하고 했으니까, 특검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하고 있어요? 돈값 하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법무부장관이 평가를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어디 국토부장관이 해 줄까요, 고용부장관이 해 줄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와 재판의 결과로 증명되는 게 낫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예산 낭비예요. 더구나 또 실적도 못 내면서 기간 연장해서 예산 낭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예결위 예산 심사 첫 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법무부로서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검은 대개 올해 안에 종료되기 때문에 수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사법개혁은 어떻게, 거기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원개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사자는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행정처장님, 예산은 예년에 준해서 담아 온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들 재정당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사법개혁한다고 말이지요, 대법관을 늘리겠다, 특별재판부를 만

들겠다, 4심제를 하겠다, 다들 변죽을 올려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고 이러면, 어쨌든 2026년도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팬히 사법부를 혼란시키고 겁박하고 국민들만 헛갈려요. 제발 확고한 입장은 잘 견지하셔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삼권분립을 흔들어 대고 예산 이거 책임 못 지는 이런 어떤, 이렇게 정쟁의 정쟁을 위한 정쟁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은 분명히 해 주셔서 혼들림 없는 사법부, 삼권분립 유지 좀 지켜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모든 법관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송석준 위원 그럼요. 혼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현실이 따라줘야 됩니다.

감사원장님, 이번에 국가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엄청난 대대적인 국가 현장의 혼란이 오는 거 보고 받으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송석준 위원 이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의 모든 전 정보, 심지어 공기업까지 관련되고 민간과 연결되는 모든 창구, 국민들과 관련되는 모든 창구가 막히고 마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막상 법사위를 준비하는 보좌진들도 국가법령정보망이 막혀 갖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국감 준비하는 데도. 이 무지막지한 국가적인 변란 사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또 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전적 피해 한번 추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권을 충동원해서라도 이런 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송석준 위원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유튜브 나갔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했어요?

분명 여기서 사과했는데 거기 가서 또 같은 말 또 했지요? 아니 그러면 직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국회에 와서 아니, 본인이 여기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유튜브에 가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국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까?

사법부의 재판 간섭 아닙니까? 법제처장이 중립을 유지하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는 발언을 자꾸 해요. 여기서 사과하고 또 유튜브 가서…… 그러면 법제처 직원들이 대통령이 막말한 대통령이니까 유튜브에 나가서 ‘대통령 물러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12개 범죄로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중이니까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다, 대통령 하야하라’라고 민간 유튜브에 나가서 주장을 하면 법제처장님 어떻

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법제처장 조원철 같은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그러니까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본인은 여기서 말도 바꾸고 국감 기간 중에 말 바꾸기를 했어요.

○법제처장 조원철 말 바꾸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석준 위원 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말 바꾸기 또 했어. 그러면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뭐하러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죄를 벌이는 거예요?

○법제처장 조원철 삼권분립을 침해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그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 종전과 같은 프레임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만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공직자가 그 유튜브를 왜 나갑니까?

○법제처장 조원철 그 부분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직원들이 만약 유튜브에 가서 제가 말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가정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송석준 위원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위원장 추미애 법제처장님, 답변을 추가로 하실 거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당장 사퇴하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사퇴 취소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 사퇴하세요!

이은재 의원님 계셨으면, 아마 사퇴 요청 계셨으면 더 강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사퇴하세요!

○서영교 위원 그만해요.

○송석준 위원 사퇴하세요!

○서영교 위원 이제 그만해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의는 필요합니다만 가급적 무관한 방송이나 이런 데를 조금 펼쳐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지상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매체를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나가셨다라는 그런 질타는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법제처장이 거기 나간 게 잘하신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질타는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하신 거예요? 잘했다고 두둔하세요?

○장경태 위원 정식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위원장님.

- 신동욱 위원** 아니, 그 매체를 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송석준 위원** 매체를 모독한 게 아니고……
- 위원장 추미애** 아마 신용력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송석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공신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그만 코멘트하세요.
- 송석준 위원** 아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 나경원 위원** 아니, 공신력을 갖췄어도 이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 신동욱 위원** 공신력을 갖춘 데다 법제처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지요?
- 나경원 위원** 공신력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 위원장 추미애** 공소청 설치법 이외에 중수청 설치법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아직 법안심의가 되지도 않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위헌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산 마련돼 있느냐 하는 것은 자칫 국민으로부터 검찰개혁이 두서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관련 상임위가 행안위이고 법무부장관님 상대로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분별 있게 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함부로 위원들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세요.
- 송석준 위원** 두서없는 거고요, 예산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적으로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지.
- 신동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 법무부 예산을 다루고 얘기를 하는 건데……
- 나경원 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십니까!
-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은 판단할 수 있고……
- 신동욱 위원** 위원장, 사과하세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 사과하세요!
- 신동욱 위원** 사과하세요!
- 나경원 위원** 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 신동욱 위원**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 나경원 위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 신동욱 위원** 사과하세요!
- 나경원 위원** 간사도 멋대로 선임도 안 하고……
- 위원장 추미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듣자 듣자 하니까 결핏하면 위원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위원장 보고 사과하라 그리고 위원장 보좌진이 위원장을 돋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 것도 뭐라고 나무라고 좀 심하시지 않으십니까?
- 신동욱 위원** 아니, 왜 남의 질의를 그렇게 펼쳐합니까?
- 위원장 추미애** 성질을, 신경질을 부려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정말 꼴불견입니다.
- 나경원 위원**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행안부 예산이 왜 나옵니까, 법무부 예산 얘기한 건데?
- 송석준 위원** 아니, 소위 구성은 지멋대로 하시고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 나경원 위원** 멋대로 위원장 그만하세요.
-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수청 예산을 왜 얘기하세요, 행안부 예산인데.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은정 위원 뭐가 뭔지를 알고 좀 회의를 하시라고.

○송석준 위원 남의 발언을 갖다가 왜 재 뿌리기 하고……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목소리 크다고 위원님의 순서만 대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아주 재 뿌리기 선수야.

○박은정 위원 중수청은 행안부 예산이에요.

○신동욱 위원 거기는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중수청은 행안부 예산이에요.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박은정 위원 아니,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지적을, 점검을 하시잖아요.

.....
○서영교 위원 이제 조용해진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예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조회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제대로 내십니까? 그동안 업무추진비 내역 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효율이 있었는데 바로 정리해서 냈던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안 내는 겁니까? 특정업무경비는 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필요한 자료는 다 냈다는……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은 관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가 2대, 어떨 때는 3대나 됐어요. 차량 운행일지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차량 기본비용 받아 갈 수 있습니까? 차량 운행 일자 내십시오. 그리고 관저에 누가 어떻게 출입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날 누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회의 했으면 기본비용이 있었을 텐데 관저에서 쓰고 있던 비용 제출하십시오. 조회대 대법원장의 관저에서 쓰이는 비용 내역 제출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마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자, 윤석열 발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랐지요.

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재판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해? 저 정도 되면 판사는 뭘 물어봐야 합니까?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귀연 재판장은 뭘 물어야 합니까? ‘정말입니까?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 나경원 위원 재판도 하세요? 저게 예산 질문입니까?
- 신동욱 위원 저건 예산 질문입니까?
- 서영교 위원 자, 오늘 제가 질의합니다.
- 나경원 위원 왜 가만히 놔두세요?
-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 나경원 위원 그게 예산 질문이에요? 왜 가만히 놔두셔, 위원장?
- 서영교 위원 이 사람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술드 치고 싶어요?
- 나경원 위원 아니, 누가 술드를 칡니까?
- 서영교 위원 12월 3일 날 전화받은 나경원 위원……
- 신동욱 위원 누가 술드를 쳐요? 위원장이 우리가 질문할 때는 꼬박꼬박 예산 질문이냐 아니냐 훼방 놓고 이것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 나경원 위원 누가 술드를 칡니까? 위원장은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 서영교 위원 내가 아주 놀라워요.
- 신동욱 위원 왜 우리 질문 때는 꼬박꼬박 그 얘기 합니까?
- 나경원 위원 왜 이러십니까, 위원장? 위원장은 왜 이렇게 편파적이세요?
-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무슨 시간을 또 멈춰.
- 위원장 추미애 시간을 멈춰 드리세요.
-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가 나오지를 말아야지. 법원행정처가 나오면 오래 해.
-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 제147조에 따라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해당함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발언 제한과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송석준 위원 퇴장시키세요.
- 나경원 위원 또 퇴장시키세요.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 경고했습니다.
- 나경원 위원 우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거예요.
- 서영교 위원 이제 조용히 하세요. 들어갑니다.
- 나경원 위원 아니,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려고요. 일당독재 마음대로 하세요.
- 서영교 위원 들어갑니다.
- 윤석열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반성과 사과부터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일당독재 마음대로 하세요!
-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저런 얘기 했는데 반성과 사과부터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나경원 위원 아니, 저 재판 받으라 그러시지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면 가만히 계세요!
- 나경원 위원 참 나…… 그게 예산입니까?
- 서영교 위원 내가 질의하면 가만히 계세요.
- 나경원 위원 예산 질의가 아니니까 그렇지.
- 서영교 위원 이 예산은 뭐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것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윤석열

은, 지귀연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국민 여러분, 이것은 랜덤으로 배당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윤석열·노상원·조지호·김봉식 내란 사건들 다 지정했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있지요, 법원에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담재판부와 일반재판부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담재판부…… 성폭력, 선거, 부패 등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내란 사건은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지껏 속았어요. 법원 공보에만 가도 전담이 있습니다. 성폭력, 선거와 부패 그리고 재정 그리고 지귀연은 식품과 보건 전담이에요.

○나경원 위원 식품과 보건도 다른 사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해.

○서영교 위원 그러면 내란은 이 상황에서 전담재판부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을 가서 지정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관련 사건으로 배당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님, 여러분은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 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 했다가 일반 사건으로 여러분은 바꿉니다. 여기에는 성폭력 전담 등이 있는데, 내란 전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하자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은 위험 운운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뭘 1분만 더 줘?

○나경원 위원 또 여기는 1분 더 주십니까?

○서영교 위원 아까 방해받았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나경원 위원 그냥 하세요. 아까 정리가 됐었어요.

○최혁진 위원 나경원 위원이 계속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최혁진 위원님, 좀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리고 그건 예산심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예요, 그것은.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와 부패 전담, 보건과 식품 전담, 재정 전담, 아동범죄 전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건과 김용현 사건은 내란입니다. 그러면 내란 전담을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내란을 일상화하자는 거예요? 내란 정당이 말이 되는 거냐고, 말이 되냐고!

○나경원 위원 무식한 소리를 계속 하셔.

○서영교 위원 그런데 여러분은 일반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전부 다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송석준 위원 내란을 일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렇게 발언권 없이 해.

○서영교 위원 지정을 하고도 이 상황에서 지귀연에 가게 여러분은 일반 배당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시간 끝났잖아요. 좀 제지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주 내란 병이.....

○신동욱 위원 아니, 왜 우리를 쳐다보세요? 지금 언제부터..... 저쪽을 쳐다봐야지.

○서영교 위원 김용현을 지귀연에게 배당합니다.

○나경원 위원 정리해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입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이 조용히 하시면 빨리 끝냅니다.

○송석준 위원 내란 정당..... 내란이 무슨 일상적인 범죄입니까, 그게?

○서영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지호 사건, 윤석열 사건을 다 넣고..... 지귀연은 저희 대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만 좀 하게 해 주세요. 정리 좀 하세요.

○서영교 위원 그리고 지귀연은 식품과 경제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용현과 내란, 윤석열의 내란에 당최 맞는 사람입니까?

○나경원 위원 적당히들 해야지, 적당히들. 지금 몇 분을 더 하는 거야?

○서영교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자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하게 전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적시처리 필요 사건으로 전담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받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즉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처에 있는 39명한테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도록 돼 있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서영교 위원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 행.....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면 법원행정처장 아니에요? 어디서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

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서른아홉 분의, 행정처에 있는 여러 분들한테 메일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법원은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을 갖다가 준 겁니다. 그리고 지귀연은 조희대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사건을 구속취소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지만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멈춰 주세요. 저희가 이걸 몇 분을 더 해야 됩니까?

○**서영교 위원**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경원 위원** 아니, 서영교 위원 혼자 하는 상임위입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법원을 믿고 지지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위원** 이런 법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한테도 똑같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난장판, 난장판. 중단하라.

○**나경원 위원** 우리 당한테도 똑같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그만, 시끄러워요, 좀!

○**나경원 위원** 시끄럽다니! 말을 얻다 대고 그따위로 하고 있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답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말씀……

○**서영교 위원** 시끄럽지! 나경원 위원 발언하는데 내가 계속 할까?

○**박은정 위원** 저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송석준 위원** 무질서하게 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은 윤석열을 위한 변호사예요?

○**나경원 위원** 지난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거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서영교 위원** 내가 묻고 싶은데 윤석열을 위한 변호사예요? 윤석열 변호사예요?

○**나경원 위원** 여기가 내란 사건만 합니까? 내년 예산 심사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예산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너무 오늘……

○**나경원 위원** 그것은 법원으로 갔으니까 법원에서 재판하게 놔두세요.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총을 쏴서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위원 이름은 없다 이건가?

○**나경원 위원** 법원에서 재판하게 놔두세요, 그냥. 누가 누굴…… 법원이 법대로 하게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합니까?

○**송석준 위원**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저기 소통관 가서 하세요.

○**서영교 위원** 송석준, 보고 반성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건 소통관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법사위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말고.

○**서영교 위원** 반성해. 윤석열과 똑같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내란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전담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 중앙법원에서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라고 특정 지어진 유형별 사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재판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해당 절차를 차차 진행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내란 사건을 그렇게 배당하는 게 타당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다고 해서 이를……

○**서영교 위원** 거기서부터 잘못 시작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서영교 위원** 내란에 부역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다고 해서 그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을 중앙법원에서 특정 재판부에 오히려 지정 배당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윤 대통령 사건이나 또 조지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그 사건에 붙여서 3건이 같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무능하셔서 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왜 무능하다고 폄훼합니까? 빨리 중단하고 진도 나갑시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저희가 내란 전담재판부를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헌이라며?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안 주면서, 이것을 한 사람한테…… 15분을 주네, 15분을.

○**나경원 위원** 아니, 똑같은 질문을 몇 번째 하고……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의혹 부풀리기도 유분수지.

○**서영교 위원** 지금 보니 모두 전담재판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처럼 내란이 갑자기 일어나 전담재판부가 없다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제안했을 때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님, 자제하세요.

○나경원 위원 몇 번을 해요, 저걸. 몇 번을 해.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법사위를 아주 그냥 무법으로 만들어, 무법으로.

○신동욱 위원 계속하세요, 계속. 계속 일어날게요, 앞으로도. 절대로 그만 안 둡니다. 경고합니다. 우리도 절대로 그만 안 둡니다.

○서영교 위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윤석열과 한패야?

○위원장 추미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의심을 할까 봐 일반 배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일반배당 그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원행정처장님의 설명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이……

○신동욱 위원 아니, 마음 속으로 의심하세요, 그냥.

○나경원 위원 특별 배당하라고 그러면 더 난리 나요.

○신동욱 위원 마음 속으로 의심하세요. 왜 회의에서……

○위원장 추미애 내란이 반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나경원 위원 그만 좀 해. 이게 예산 국회지…… 예산 국회 아닙니까, 예산 국회?

○신동욱 위원 그만 좀, 그만 좀 합시다. 마음 속으로 의심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내란이라는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을 반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예산 국회 아닙니까, 예산 국회?

○위원장 추미애 내란을 극복해 낸 나라에서…… 말씀드렸지요, 재판을 못 했어요. 17년 동안 재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17년 만에 온갖 증거를 찾고 국회가 질타를 하고 정권교체가 몇 번이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다음에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란 재판 쉽지 않습니다. 내란 극복을 국민들이 안 해 줬더라면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눈꼽만큼도 노력을 안 하고 내란에 편의적인, 자칫하면 내란 성공을 도울 뻔했던 그 위험천만함을 질타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나경원 위원 내란은 아직 유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고.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그냥 사법부를 존중하고 맡겨 주세요, 행정부하고.

○나경원 위원 맡겨 주세요.

○송석준 위원 간섭하고 개입하지 마세요.

○위원장 추미애 논리적으로 훈련된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태도 자체가 의심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산과 무관하다고요? 이런 사법부에 예산을 왜 주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 송석준 위원** 다 자르세요, 그러면. 작년에 특활비 자르듯이 잘라 보셔.
- 위원장 추미애** 사법 정의를 회복하지 않고 포고령에 동조를 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 혈세를 왜 지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예산과 무관한 사태입니까?
-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혼자 생각이세요. 사법부를 없애세요, 그러면.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별로 안 멋있어요.
- 송석준 위원** 아니, 대법관 숫자 늘린다면서요, 대법관 숫자.
- 위원장 추미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나경원 위원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 나경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위원장의 혼자 생각이에요.
-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안 멋있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위원장 추미애** 내란만 나오면 일당독재라고 벌떼같이 막 대드는데, 내란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 송석준 위원** 내란 병, 내란 병. 내란 중독증.
- 나경원 위원** 누가 내란을 무서워합니까?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내란이 안 무서워요? 내란이 당연히 무서운 거지.
- 송석준 위원** 아니, 전담부 만들자고 그러는 것 보니까 내란을 그냥 일상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 위원장 추미애** 내란 극복이 그렇게……
- 나경원 위원** 내란만 떠들면 다 마패입니까? 만병통치약입니까?
- 위원장 추미애** 내란 극복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 나경원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 이성윤 위원** 조용히 좀 하십시오. 독재밖에 몰라, 독재. 독재밖에 모르지요?
- 위원장 추미애** 내란 병에 누가 걸린 거예요, 도대체?
- 나경원 위원** 이게 의회 독재예요, 이렇게 멋대로 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 이성윤 위원** 독재밖에 모르셔. 독재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 나경원 위원**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떠들어.
- 위원장 추미애** 국회가 내란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치열한 노력을 훼방을 놓으면서 그것을 의회 독재라고 뒤집어씌우십니까?
- 송석준 위원** 왜 훼방입니까?
- 나경원 위원** 아니, 멋대로 발언권 제지하고 멋대로 소위 구성하고 멋대로 하는 게 독재지.
- 위원장 추미애** 윤석열이 무장한 군인으로 국회를 침탈할 때는 뭐하신 겁니까?
- 송석준 위원** 법정에서 지금 엄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켜봅시다. 우리 법사위는 지켜봅시다.
- 나경원 위원** 이게 독재지요! 간사 선임도 안 하고.
- 위원장 추미애** 아까 서영교 위원이 보여 주신 폭탄주를 별들을 모아 놓고서 국군의 날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나라를 파탄 낸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면서 왜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 나경원 위원**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 송석준 위원** 여기가 지금 재판정입니까?
- 최혁진 위원** 동조자라 그렇습니다, 동조자들!
- 위원장 추미애** 몰랐던 게 그렇게 당당한 겁니까?
- 송석준 위원** 여기가 재판정이에요?
- 최혁진 위원** 가담자들!
-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이성윤 위원** 이제 나경원 위원도 곧 소환조사받을 거예요.
- 나경원 위원** 법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최혁진 위원** 내란 가담자! 조용히 좀 하세요, 방해하지 말고.
- 위원장 추미애** 잘났습니다.
- 나경원 위원** 법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이성윤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방해 좀 하지 말고!
- 위원장 추미애** 눈곱만큼이라도 미안한 느낌을 가져 보십시오.
- 나경원 위원** 어디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고 이래서 무슨 헌법국가가 되고 법치국가가 됩니까?
- 이성윤 위원** 법사위를 먼저 존중하세요!
- 나경원 위원** 존중을 하게 해야지!
- 위원장 추미애** 무질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은 질의를 잘하신 거예요. 그걸 질의를 못 하게 훼방 놓은 게 나경원 위원, 송석준 위원, 신동욱 위원이십니다.
-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 똑같은 것 여러 번 질문하고……
-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 위원장 추미애** 정신 차리세요!
- 정신 차리세요!
- 송석준 위원**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철이 좀 드세요!
- 나경원 위원** 그거 아직도 못 알아들으세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합니다.
- 송석준 위원** 예산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위원장 추미애** 철 좀 드시라고!
- 나경원 위원** 철이 안 듣다니! 추미애 위원장이야말로 철 드세요! 어디다 철 듣다는 얘기를 해.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철 들으라 그래요?
-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말조심하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말조심하세요.
-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 말조심해요!
-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 박은정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그 비용은 부대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활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는 올해 안에 절대 그것 사용하지 않을……

○박은정 위원 올해 안에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그 40억 특활비는 검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0억 특활비 한 푼이라도 검찰이 쓰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까지도 한 푼도 안 썼고요.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활비 7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2021년에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일 때에 그 당시에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검찰수사권 축소 입법으로 2개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84억이 줄어들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현재 84억 중에서 2개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28억이 맞습니다. 3분의 1이니까요. 28억이 맞고, 그 28억 중에서도 올해에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21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다시 산정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빙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빙자료 안 내고 작년에 냈던 거랑 똑같은 자료를 내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시 검찰에, 증빙자료 제대로 내고 이 특활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21억 원의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을 저도 궁금해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옮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 예규에 따라서 윤석열 내란 수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지구연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한 달에 수십 건 정도인데 그중에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배당이 됐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규 5조에 따라서 ‘사건배당 주관자가 지정하여 배당한다’ 그러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누구냐 하면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지구연 재판부에 그냥 끌어서 배당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김용현 사건은 배당 제외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박은정 위원 그러면 김용현 사건도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김용현 때부터 지구연으로 이게 처음부터 얘기가 된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것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은정 위원 그리고 그 후에 관련으로 붙였다는 말씀이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나머지 2건……

○박은정 위원 다음 화면 보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중앙지법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선거·부패 전담 27부, 한덕수 내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것도 선거·부패 전담 33부, 윤석열의 특수공집방 사건도 선거·부패 전담 35부, 이상민에 대해서는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 4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를 중요사건 적시처리 배당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이 배당됐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을 그렇게 배당을 해 가지고 윤석열을 붙였다는 것인데 그후에는 왜 중앙지법에 제대로 배당을 한다면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 공직자의 내란과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나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 사건만 빼 가지고 김용현부터 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배당을 했다. 그것을 배당한 사람은 지금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해석을 해 보면.

그려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귀연을 특정해서 김용현부터 윤석열을 붙이고 노상원을 붙이고 조지호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신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 질의가 있고 나서 저도 중앙에서 듣고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선거나 부패사건하고 전담사건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선거·부패사건의 범위에 내란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직접적인 관련 있는 김용현 사건과 같이 배제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해서 지부장한테 배당이 되고 나서 나머지 윤 대통령 사건은 어떻게 보면 주범이니까 거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련 사건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넓게 보면 내란사건에 들어가는 다른 사건들, 아까 이상민 등등 이런 사건이 있지만……

○박은정 위원 아니, 한덕수, 이상민, 그다음에 윤석열은 직접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관련이 있는데 이건 따로 또 선거·부패 전담으로 지금 뺏다는 거예요. 뺏잖아요, 중앙지법에서.

그러면 지귀연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니까 이것은 뺏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배당이 됐는지가,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이 중앙지법에서 기준 없이 배당이 된 것 같거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최초에 김용현 사건이 배당될 당시에는 현재 법원장이 아니라 종전의 김정중, 다른 법원장이 계실 때 그와 같은 접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제사유 중에는 예를 들면 연고 관계도 있지만 사건업무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그럴 때 그것은 그렇게 하면, 기준 이 사건도 지금 12월 15일 날 결심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밝혔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업무부담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하면 결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분담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닌 가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은정 위원** 기준이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 저희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추미애** 따져 볼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국민이 보시기에는 한심하고 졸속적이고 임기 방편적이고요. 애초부터 그것은 끼어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님과 지귀연 판사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

- **송석준 위원** 사법부를 존중하고 개입하지 맙시다.
-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정리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개입해서 말을 해야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 **송석준 위원** 계속 건건이, 그것도 우리 쪽은 편 안 들고 꼭 여당 편만 드시니까 그렇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건건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여당, 야당 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법사위 왜 오신 거예요? 법사위가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 **나경원 위원** 내란 극복은 재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 **송석준 위원**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산.

○ **위원장 추미애** 예산이 누구 돈이에요?

○ **나경원 위원** 재판에서 하면 됩니다. 내란 극복은 정치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 **송석준 위원** 국민의 돈이지요.

- **위원장 추미애** 국민 돈을 내란 재판 엉터리로 하면서 내란범 석방하는 데 써셔야 되겠습니까?

○ **송석준 위원** 왜 엉터리라고 매도를 하세요? 사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펌웨를 하고 짓밟습니까?

- **나경원 위원** 재판을 그대로 놔 두세요. 왜 정치적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치적으로는 탄핵으로 하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으로 계엄 문제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 **송석준 위원** 이것은 입법부의 직권 남용이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월권이에요, 월권.

- **서영교 위원** 아니, 국군의 날 술을 그렇게 처먹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뻔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광종근을 회유하고 압박하려고 했다가 된통 당한 거야.

○ **송석준 위원** 여기서 폭탄주가 무슨……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산하고? 그건 저녁에 가서 얘기하세요,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할 얘기를 왜 국민들 앞에서 합니까?

- **이성윤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먹은 게 문제예요.

○**서영교 위원** 뭐라고요? 별들을 불러다 놓고 국군의 날에 했는데 무슨 친구들하고…… 논리가 똑같구먼, 윤석열하고. 이제 벗어나요, 그만.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라는 거지.

○**송석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지금 저거 방송 진행 중이잖아요.

○**최혁진 위원** 국민을 배반한 공공기관에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성윤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술 먹은 거예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고요.

○**이성윤 위원** 세금 아끼자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런 얘기는 운영위에 가서 따지세요, 운영위에서.

○**서영교 위원** 출입기록 가지고 오고 차량일지 가지고 오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오고 관저 예산 다 갖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대통령 술 먹은 예산 여기서 왜 따지느냐고요, 여기서?

○**서영교 위원** 내가 이야기한 건 관저 예산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관저. 조회대 관저, 윤석열 관저가 아니라. 듣지도 않고서. 조회대 관저 예산, 조회대 차량일지, 예산,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산, 국정업무 경비 예산.

○**송석준 위원** 지난번에는 그냥 체포 과정에 속옷 그 얘기를 그렇게 떠들더구먼 이번에는 또 폭탄주 가지고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

○**박지원 위원** 난장판 만드는 사람이 난장판을 얘기하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방금 추가 확인해 준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중앙에서 말씀하시기를 박 위원님……

○**위원장 추미애** 중앙에서 누가 말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형사수석부장이 지금……

○**위원장 추미애** 증인으로 불렀을 때 안 나오신 형사수석부장께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로 지귀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의 업무량 때문에,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배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어쨌든 법원장이 지정하신 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김용현 사건 당시에는 종전 법원장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무작위……

○**박은정 위원** 다른 사건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다 다른데 이것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만 법원장이, 배당 주관자가 지귀연을 배당하신 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사건에 관련 사건으로서 배당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무분담위원회나 사건 배당……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말이 되십니까? 윤석열 사건을 거기다가 그래서 붙여

요? 말이 되십니까? 이렇게 큰 사건을 그렇게 붙여요? 지귀연한테 붙여 주려고 한 거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 회의 좀 진행해 주세요. 이게 간담회입니까? 질의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떠들면 안 돼요.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윤석열이 재판정에 나와서 ‘김건희’ 하니까 ‘영부인한테 김건희라고 말이 되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박지원 위원** 아무리 장관이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술먹고 저런 것들이 과연 내란 청산이 되지 않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법무부, 검찰 인사 다 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검사장급하고 고검 검사까지 인사만 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나머지 평검사들은 내년 2월에 정기인사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나머지 간부들은요? 그대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차적으로 검사장급 그다음에 대검 검사, 그다음에 고검 검사까지 인사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임명됐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제청은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지금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 외국 노동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생산이 안 돼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농어촌에는 약 10~15%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또는 계절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우리 경제가 지탱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물론 본국에도 보내겠지만 소비활동을 해서 경제가 지탱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 주는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목포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킨다고 했다가 행안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포 지역에 있는 최소한 수만, 10여 만의 해외노동자를 거기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법무부가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출입국관리본부라든가 그다음에 교정이라든가 범죄 예방의 업무량이 굉장히 한 2배, 3배씩 늘었는데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얘기하면 검찰 업무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만 우대하지 마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방향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출입국관리본부나 교정본부나 중요하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면서 물론 생활인구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예를 들면 해남군이 6만 5000 정도 돼요. 그런데 해외노동자가 1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우리 국민만 하고 그 사람들을 벼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수시직제에도 반영하려고 행안부장관에게 몇 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 정규직제 개편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더 특별하게 제가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5·18 정신적 피해자들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을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게 아직도 결정 안 됐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그래서 국가폭력 사건 관련해 가지고,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친일 행위자들이 시효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가폭력 관련 사건에서도 소멸시효 주장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다—물론 판례는 아직은 없습니다—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그러면 해외노동자 문제를 언제까지 정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제가 바로 언제 시한을 두고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노력할 부분들을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열 번째 질의 순서는 당초 박준태 위원이셨는데 신동욱 위원으로 1차 변경이 됐고 다시 신동욱 위원에서 주진우 위원으로 2차 변경이 되었고 3차 주진우 위원에서 나경원 위원으로 변경이 되어 나경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저는 법사위는 한마디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못 하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박지원 위원** 예산 문제 아니네!

○**나경원 위원** 예산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 우리 당이 하면 뭐라 하고 민주당이 하면 그 주제로 지금 몇 분을 얘기하셨습니까? 간담회장입니까, 이게? 창피한 줄 아세요. 말끝

마다 내란 핑계 대면서…… 내란은 지금 법의 재판을 받고 있고 계엄은 이미 탄핵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내란 이야기하고 법사위 이렇게 위원장 마음대로 멋대로 해서 되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횡포입니다, 횡포. 추미애 위원장의 횡포라고요. 간사를 임명을 해 줍니까? 소위 위원을 우리 뜻대로 해 줍니까? 이게 바로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독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영장 내용에 뭐 이런 게 있대요. 10월 2일에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 회식하면서 말한 것까지도, 만찬한 것까지도 내란 모의라고 했다는데 이것 지나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제가 특검의 수사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어쨌든 특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법무부장관께서 모든 예산부터 다 관할하시는데요 이것 지나치다고 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한 것이요 아니, 민주당 의원으로 충분히 계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애시당초 불능법이고요. 우리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해제 표결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개의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이한다? 내란 극복을 이유로 해서 한 마디로 말 안 듣는 야당 해산시키고 말 잘 듣는 야당 하나 만들어서 1당 독재국가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야당 말살의 신호탄이다. 법무부장관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멈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뭐 얘기했다고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주의 주셨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저희들이 주의 줬습니다.

○나경원 위원 조원철 법제처장, 이진숙 위원장 발언하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법제처장’ 이름을 달고 어떻게 대통령이 유죄니 무죄니,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것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주의 주십시오.

○감사원장 최재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저희들이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진숙 위원장하고 똑같이 주의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나경원 위원 이진숙 위원장 영장 신청하고 수갑 채웠는데요. 조원철 처장 똑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 이진숙 위원장도 대통령선거 있을지 없을지 결정도 안 된 9월에 유튜브 출연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법제처장도 영장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영장 신청하면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경찰이 수사해야 될 문제고요.

○**나경원 위원** 경찰이 신청한 것 검찰이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권한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 회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지금 법사위가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내란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가는 것입니까? 내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창피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검찰 특활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기본 임무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요새 잘하신 것 하나는 있어요. 간첩죄 개정하시겠다고 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제가 그것 칭찬해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사위에서도 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특활비 0원 만들었다가 특활비 다시 원복하시니까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이번에는 검찰 특활비 써도 됩니까? 제대로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토론회 했습니다. 마약은 사법·치료·재활 이 세 단계가 중요한데요. 지금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심이 되어서 각 관세청, 경찰 다 하는 것 종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권 완전 박탈되고 나면 그 기능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약 공급 그리고 투약 다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마약의 중간, 어떻게 보면 기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수사공조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동안 국제 수사공조의 노하우는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한민국이 정말 마약 청정국은커녕 이제 완전히 좀비거리 생기는, 샌프란시스코 좀비거리 생기고 이런 쪽처럼 된다면 그것 다 검찰 해체한 지금 정부 책임이다, 이것 수수방관한 법무부장관 책임이다라는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나경원 위원** 마약 예산 늘려 놓으셨는데 부족하다는 것 지적하고요. 특히 치료와 재활 부분에 대해서 더 내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전체 수용자 중에서 성범죄자 다음으로 마약 범죄자들이 한 7000명 내외가 됩니다. 치료·재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나경원 위원** 올해 마약범이 3만 명 검거됐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100분의 1이 검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3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범 정부 차원의 마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더 강하게 단속하고 치료·재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서영교 위원** 마약 우두머리를 꼭 잡으세요. 전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마약 우두머리를 꼭 잡으세요.

○**나경원 위원** 면책특권으로 맨날 허위사실 얘기하시는 것……

○**서영교 위원** 꼭 잡으세요.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지난번 국감 때 지귀연 재판부가 식품·보건 전담인데 왜 이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배당이 됐느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 과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과 몇 번 통화를 하고 경찰에서 하던 사건을 검찰에서 긴급체포해 가지고 영장 청구해서 기소했고 이거는 내란세력과 검찰이 연계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듯이 법원도 지금 그런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께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지귀연 재판장과의 관계, 연구관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에게 천거했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물어봐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답변서를 보고 오기로는 첫째는 대법원장님하고……

○**이성윤 위원**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원장님하고 지귀연 부장은 재판연구관과 또 대법관으로서 근무했지만 전속은 아니고 같은 시기에……

○**이성윤 위원** 그것은 기록상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친한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과연 지귀연 재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또는 추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질의하신……

○**이성윤 위원** 아니, 제가 또 이것 질문하니까요 나중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0월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되었어요. 민간인이 되면 민간법원으로 그 사건이 이송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박안수 전 참모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이 어디로 이송됐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주소지가 논산입니다. 논산지원으로 갔습니다.

혹시 즉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보고 안 받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렸지만 전담 사건 여부하고 즉시처리 필요 중요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윤 위원** 이 사건이 논산지원으로 갔는데 논산지원은 합의부가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또 걱정합니다. 이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어떤 경위로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중앙지법으로 이송을 하더라도 꼭 지귀연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12월 15일 날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만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까 윤리감사관실이 검찰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행정처로부터 독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장 직속으로 있었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처와 결별된 대법원장 직속의……

○**이성윤 위원**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대법원장 직속, 독립된 기관으로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윤리감사관이 지금 보니까 법원 출신만 임명이 됐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사관으로 된 분이 딱 두 분입니다.

○**이성윤 위원** 두 분인데 법원 출신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과거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한 것처럼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온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법원 출신이 윤리감사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대법원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주신 말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법무부장관님, 대장동 사건이 10월 30일 날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이 약 700쪽이에요.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다 검토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요약해 온 내용은 대충 봤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윤 위원** 그런데 그 판결문을 좀 읽어 보니까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검찰이 또 이렇게까지 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부분이 나오는데 2022년, 이게 기소가 21년에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 피신의 증거 능력을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들이 배임죄가 아니고, 이미 기소했던 배임죄가 아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수사를 해 가지고 그 피고인들을 조사를 많이 합니다, 증언을. 그래 가지고 그걸 재판부에 내고 공소장 변경하고 별건수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셔 가지고 좀 이런 검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는 이런 검사들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계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어쨌든 별건수사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점검해서요 다시는 이런 별건수사로, 이 대장동 일당 처벌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피의자 신분 조서의 증거 능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가 있다는 비판이 있던데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엄정 처벌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장관님, 저는 범죄 예방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유괴 미수 사건이요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보도가 났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만 삼백몇십 건의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그러니까 하루당 1.3개 꼴이래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개별 경호를 하는 데가 많다라고 하고 실제 처벌됐던 수위를 보니까 유괴 미수범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단 20%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목적범처럼 되어 있거든요. 유괴범은 100% 다 실제 목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실제 유괴가 성공하면 아동 실종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의한 실종인지 아니면 정말로 애를 잃어버린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 미수범은 사실상 너무 초기에 잡히니까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서 유괴 미수 관련돼서 대책한 보도자료가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꼼꼼하게 읽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대책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대책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걸리면 엄벌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n번방 사건 있었을 때요 저희가 사실 제도개선하고 m번방 같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하면 합정수사도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들끓다보니까 인력도 엄청나게 많이 배치하고, 좀 진짜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를 했어요. 저희가 법사위에서도 논의해 가지고 합정수사와 관련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속된 말로 진짜 유인해 가지고 범인들을 잡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괴 미수는, 목적범 부분에 대한 법 규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할 테니까 법무부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유괴 미수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경찰분들을 5만 명이나 학교 주변에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경찰 인력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때는 5만 명을 배치하는데 경찰이 5만 명 배치돼 있는 동안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안 저질러요. 그런데 사회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면 스스로 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목적범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저도 법안을 하나 냈거든요. 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정말로 저는 정치적으로 설명하게 더 센 법안을 낸 것이고 다른 법체계와 비교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면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 처벌된 것을 보니까 유괴 미수로 된 범죄자 중에 40%가 성범죄 목적인 걸로 처벌이 됐어요. 그런데 그 통계에는 의도가 입증이 안 돼 가지고 처벌 안 된 사례들이 엄청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입장에서는 결릴 확률이 떨어지니까 또 계속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려도 범죄에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자장면 사 줄게’, ‘귀여워서 그랬다’, ‘술 취해서 잘 기억 안 난다’ 이런 건데. 이 목적범 부분은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한국 부부가 해외에 가서 차에 잠깐 애들을 두고 마트에 갔다 왔는데 그 한국인 부부가 체포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잠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에 잠깐 애들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외국에서는 아동학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도라고 하면 저는 이 유괴 미수 부분은 너무 잣다 보니까 진짜로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너무 높아 보이고.

그래서 법 규정을 지금 법무부 대책은 사실도 저도 법무부 검사로 있으면서 그런 대책 많이 써 봤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럴 듯한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걸렸을 때 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점을 살펴봐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전자발찌 예산을 장관님 취임하기 전에도, 지난 정부에서도 제가 전자발찌 예산을 계속 강조한 게 뭐냐하면 이것도 실무적인 것이긴 한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재범률이 낮아지면 강력범죄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하는 순간 이것은 정말 극악한 범죄라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자발찌 감독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열일곱 사람의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을 감시했는데 법무부에서 제가 하도 그러니까 조금 늘

려 줬어요. 이번 예산 할 때 그것만큼은 챙겨서 획기적으로 늘려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유괴 미수 관련해 갖고서 일단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면의 의사·의도·목적·고의 이것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의도를 상대방이 입증하게, 이 정도 되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서 입증 관련해 갖고 저희 입법적인 방법들도 위원님 지적……

○주진우 위원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너무 균형 따지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말 정확히 검토해 갖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다 환영할 겁니다, 이것은. 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하여튼 전자발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인원도 좀 확충하고 어쨌든 이게 범죄의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유효하다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도와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저희도 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의사진행 관련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었던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재적 과반 위원들이 개의 요구를 했었는데 개의 요구를 해도 긴급 현안질의나 법안 심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 자체가 출석도 안 합니다, 과반이 개의 요구를 하는데도.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달라고 해도, 피감기관 없는 상태에서 속기록이라도 남기려고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해도, 상임위원장도 아닙니다. 사회권 위임받은 간사가 와서 몇 분 만에 산회하고 나갔던 적 여러 번 있었다 이런 말씀 한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회의라도 하면서, 지금 피감기관장들 이렇게 오셨는데 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난번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일 저희 예산 심사 있고 또 다음 주 수요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특경비, 검찰 특경비가 아니고요 법무부 특경비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는 점. 대부분 교정본부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업무추진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아무래도 특수경비가 아닌 일반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 점.

그리고 김현우 소장이 지금 안양고도소에 있는데, 지금 제가 교정본부가 문제라고 생

각하지 않아서 질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뿐이지 교정본부와 관련된 여러 제보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리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안 내실 있게 짜신 것 같아서 저도 내실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시간외수당 문제나 명퇴수당 부족해서 못 주신 부분들 또 지금 이번에 국선변호사 지원금을 종료하신 것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대법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연간 아마 6억 8000 정도……

○장경태 위원 총액,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합쳐서.

○장경태 위원 지금 계속 처음에는 40억 이랬다가 24억 이랬다가 다시 40억이랬다가…… 지금 제대로 된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얼마큼 편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 특경비도 얼마 정도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같이 내일 소위까지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예산안에서 기준에는 국회 팀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장경태 위원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업무추진비가 특활비·특경비도 아니고 일반경비를 이렇게 혼동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너무 성역화, 그동안 법원이 너무 성역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뻔했으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내실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특경비 다 제출 안 됐다는 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제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감사원장님, 국내외 여비 제출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특활비·특경비만 삭감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물론 원장과 사무총장의 책임도 있지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일괄 삭감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회복을 하시려면 제대로 제출하시기를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여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검찰도 특경비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업무추진비 액수가 인원 대비해서 너무 작고요. 그래서 좀 내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제처장님,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 33억 정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도 검찰에서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된 150억 예산안 이미 편성한 적 있고요. 감사원도 오아시스 예산 편성해서 150억 정도 했습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AI 구축 관련된 예산, R&D 예산이나 또 교육연수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가급적 다 원안 보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점과 더불어 그래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은 하셨겠지만, 좀 부족하게 신청하셨겠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지금 헌법소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정하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지금 입법 추진이 매우 높게 일어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나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사건이 폭주할 것이다, 4심제 논란 이런 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폭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하기 전에 하나 먼저 정리해 볼까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적이 있지요? 헌법재판소법 방금 말씀드린 68조 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현재가 위헌 결정을 한 법을 적용한 재판, 그래서 그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위헌론, 이 헌법적인 판단은 이미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가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건이 폭주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사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소유예 사건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한번 통계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표를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기소유예 사건이 47%를 차지합니다. 2022년에 49%, 23년에는 45%, 24년에는 조금 줄어서 39%인데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는 68%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소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업무량을 가장 많이 늘리는 것은 바로 기소유예 사건인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 무죄라고 생각했던 이 피의자는 어디 가서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헌법소원밖에 없으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조금 돌려서 이 기소유예 사건을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어딘가에서 다툴 수 있게 바꾸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의 업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2008년도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처분이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사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나더라도 기소유예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을 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토론회나 내부적인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기소유예 사건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다투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형사소송법 해석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 규정을 바꿔서 다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입법 재량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입법 재량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바꾸는 것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관들을……

○**김용민 위원** 그 부분은요 헌법재판관은 9명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사수를 늘리는 것은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논의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입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발의가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계속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새로 생기는 공소청은 수사관이 없지요, 사실상? 수사를 안 하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현재로서 수사 기능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관이 대거 이동해야 되는데, 어딘가로는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지금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공소청법이, 중수청법이 어떻게 구성될는지 조직 인력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그러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이전될 수 있게 법무부에서 미리 좀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총리실의 검찰개혁 TF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점들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내년 10월 2일은 날짜가 이미 고정됐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럼요.

○김용민 위원 고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대충 올해 안에 윤곽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위원으로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이 적시 배당 사건으로 고무인이 썩혀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경로로 이제 통지도 하고 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그 분류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네요. 김용현 또는 김용현의 대리인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통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위원장 추미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행정처에 보고가 됐는데 국민적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배당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수십 건이나 전국에서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건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담당자가 저희 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되어 있는 메일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39명이 동시에 그것을 받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고, 거기서 중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아까 내란재판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사건으로 해서 현재 배제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서 그중의 한 곳이 아마 지구연 부장으로 배당이 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것이 적시처리에 필요한 중요사건 배당 방법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배당하고 그것하고 무관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무관하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또는 전담재판부가 있으면 그쪽으로 배당하는 거고 아니면 일반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배제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일반사건처럼 배당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 윤 대통령 사건이나 조지호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다시 그쪽으로 배당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이라고 행정처에까지 보고를 다 해 놓고 또다시 일반배당처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시처리 중요사건하고 그다음에 배당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전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누가 이게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이라고 했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에서 사회적인 이목이 집행되는 중요사건, 한 달에도 수십 건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 보신 것처럼 적시처리 중요사건 예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사건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법원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까 그러면 형사수석부장은 업무량 때문이라고…… 단순히 업무량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사유 중의 하나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특정 재판부에 과다하게 많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사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배제사유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당시에 지구연 재판부가 제일 사건 수가 적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위원장 추미애 그것을 합리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은 제가……

○위원장 추미애 그냥 단순히 업무량…… 왜냐하면 경제·보건·식품 전문성에 없는, 전문성이 거의 180도 동떨어지는데, 지금 아까 무슨 MC 사회자 같다라고 최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재판 진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전문성 없어 보이거든요. 불안불안합니다. 재판 진행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로 개별 재판부 개별 법관은……

○위원장 추미애 왜 지귀연이었느냐 설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이 전혀 동떨어지고 국민께 보이는 재판 진행 모습 자체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핵심을 짜르지도 않고 산만하고요. 그 상황을 그냥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전문성·복잡성 처리 시연,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국회에 보낸 답변이 업무량이라는 것뿐이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거기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포괄적인 종합적인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판부가 지나치게……

○위원장 추미애 이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할 때 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니까 일반사건 배당이 되는 전체 형사재판부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모든 재판장들과 통상 협의를 거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협의했다는 사실과 협의 방법, 협의의 여부 그다음에 협의의 방법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추미애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어느 누가 믿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어느 누가 믿겠어요? 자, 내란전담재판부,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이 내란 윤석열 사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일반사건인가요, 중요한 사건인가요? 중요한 사건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중요한 사건이지만 분류상으로는 일반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려야 된다, 그 때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에 대한 의견 하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당시에 지귀연 재판부로 갈 때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12월 3일 날 여러분이 긴급회의 했거든요.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귀연에게 배당될 때 그 배당된 과정 주십시오. 그 자료 위원장님께 요구드리고요.

법무부장관께요, 이 박상용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해라’라고 하는 이 녹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녹취 남아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면회할 때 김성태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페트병 석수병에 소주를 담아 와라. 내가 오늘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그때 제가 소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100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내역이 나왔는데요. 12100원이 소주 세 병, 1800원짜리 소주 세 병. 그리고 생수 석수 세 병, 석수는 700원짜리인가 봐요, 2100원. 그리고 1800원짜리 세 병 하니까 5400원. 담배 한 갑이 있었대요, 담배 한 갑, 4500원. 그리고 여기에 비닐봉지에 담았기 때문에 12100원이랍니다. 이 석수병에 보니까 세 병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석수병이 남아서 1800원 하나 더 나와서 소주가 한 병이 더 나왔어요. 소주가 네 병에, 담배까지 피웠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것 박상용 나와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아니, 불려 나간 내역 저희가 출정이라고 하지요. 짹 다 했거든요. 이 내용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박상용이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위증에다가……

12100원에 관한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수사에 관한…… 저는 바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는요 지금 고검 감찰부가 이미 사실상 수사에 지금 착수했고요. 수사에 착수했고, 또 일부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 중인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검 감찰부에 요구해 가지고 제출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내용도 있다고 하면 제대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내역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담배까지 피웠다 그래요. 박상용, 이게 말이 됩니까? 담배 피웠는데 이것 확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송석준 위원** 그만해요. 시간 지났고.

위원장께서도, 여기서 예산심의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지금 시간 지났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님께 사회권을 드린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삿대질하고 그럽니까? 품위를 지키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경우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그렇습니다. 지나치십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은 오늘 따라 우리 소위 구성을 갖다가 제멋대로 하고. 법사위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관장들 있는 데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추미애 언성을 낮추세요. 언성을 낮추세요.

(장내 소란)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청가 위원(2인)

박준태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최재해

법무부
장관 정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조원철

교육부

차관 최은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보고사항】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811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2025. 10. 1.
총리령	제206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2025. 10. 31.
부령	제11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2025. 11. 6.